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

# 코스카리porter

Vol. 19

KOSCA + NEWSLETTER 2019



# CONTENTS

KOSCA LETTER Vol. 19

코스카레터 제 19 호



2019년 Vol. 19

발행인 회장 김세원  
기고/투고 kosca21@kosca.or.kr  
편집/발행처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디자인/제작 CCA (051. 647. 5991)  
인쇄 성광정판 (051. 261. 0027)



20



54

## PART 1

- 04 1. 신년사
  - 김세원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시회 회장
  -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
  - 오거돈 부산광역시장
  - 박인영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 김석준 부산광역시 교육감
- 09 SPECIAL. 01 > 소통하는 문화공간 - 힐링 무비

## PART 2

- 10 2. 협회 소식
- 24 SPECIAL. 02 > 소통하는 문화공간 - 힐링 북
- 26 3. 건설공사 수주지원 및 제도개선사업
- 36 4. 2018년 하반기 신기술 현황
- 39 SPECIAL. 03 > 건강 지킴이

## PART 3

- 40 5. 전문건설인의 삶
  - 건설인 제35호 (주)삼성도장 대표 이관옥
  - 건설인 제36호 해진건설(주) 대표이사 이상호
- 44 SPECIAL. 04 > 쉬어가는 유머
- 45 SPECIAL. 05 > 이달의 경영어록
- 46 6. 건설산업정보 - Part.1
- 54 SPECIAL. 06 > 부산의 명소(낙동강하구에코센터)
- 56 7. 건설산업정보 - Part.2
- 64 SPECIAL. 07 > 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내용 및 문답풀이
- 66 8. 건설 관련 유권해석 및 판례
- 69 SPECIAL. 08 > 세계의 아름다운 건축물(크시비 도메크)
- 70 9. 회원사 질의-응답
- 72 10. 특별기고
  - 2018 해외선진건설현장 시찰 기고  
지산특수토건(주) 대표이사 김형경
- 75 SPECIAL. 09 > 그것이 알고 싶다(하도급 분쟁 해법)

## PART 4

- 76 11. 회원사 현황
- 78 SPECIAL. 10 > 생활 속 유용한 꿀팁
- 79 SPECIAL. 11 > (주)YTN 복지혜택물 안내
- 80 12. 건설업 중대재해 사례와 대책
- 82 SPECIAL. 12 > 2018년도 건설(전문)공사 실적신고 및 2019년도 시공능력평가
- 88 SPECIAL. 13 > 2019년 건설업 교육 이수 안내
- 89 SPECIAL. 14 > 중앙회-전문건설공제조합 업무단신, 부산시회 1/4분기 주요일정 안내
- 90 13. 회원사 참여 마당

# 01

## 신년사 MESSAGE

### 끊임없는 노력으로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 갑시다.

#### 김 세 원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회장



희망찬 己亥年の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발전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지난 2018년은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상황 속에서 대내외적인 악재들로 경기회복이 둔화되어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이는 교수신문이 선정한 2018년 올해의 사자성어 '임중도원(任重道遠)'에서 잘 드러납니다. '논어-태백편'에 실린 '임중도원'은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는 뜻입니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차례로 성사되면서 불어온 한반도의 평화분위기도 불구하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금리인상, 중국과의 무역마찰 등은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주었으며, 국내경제는 복지예산 증가와 이에 따른 SOC사업의 감소, 부동산경기 하락 등의 영향이 공공공사는 물론 민간건설 부분의 공급물량 감소로 이어져 힘든 한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고용불안과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른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까지 더해지며 우리 전문건설 업계에도 많은 변화와 혼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정부는 "경제 활력 제고"를 2019년 경제정책의 핵심방향으로 내걸고 전방위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민간투자촉진, 8조 6천억원이 넘는 SOC사업 상반기 조기집행 등을 발표하며, 지난 2년간 이어온 소득주도 성장 중심의 정책에서 경제활성화 우선정책으로 전환한다고 밝혀 어려운 경제상황에 조금이나마 희망을 엿보게 하고 있습니다.

회원사 여러분!

2019년은 빠르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시기에 새로운 비전을 통한 창조적 건설 환경을 만들기 위한 변화와 혁신이 그 어느 해보다도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과거 속에 머무르는 자에게는 발전은 없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교훈 삼아 오늘을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오늘을 살아가기 위한 원동력은 좀 더 나아질 거라는 내일에 대한 희망과 노력에서 찾아야 합니다. 자강불식(自強不息)이란 말처럼, 끊임없는 노력이 밑바탕이 된다면, 우리는 희망을 완성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그러했듯 우리 전문건설인들은 우리나라 경제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맡은바 책무를 다하며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 온 주역이라는 자부심으로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 왔습니다. 우리 협회도 전문건설인들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2019년이 될 수 있도록 회원사의 권익신장과 업역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9년, 다시 맞는 "황금돼지 해"에는 지난 반세기 동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조금씩 발전을 거듭해 왔던 우리의 모습을 되새기며, 끊임없는 노력의 결실로 미래에 대한 희망의 청사진을 이어나가는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길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끝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전문건설 가족 여러분!

2019년 황금돼지의 해인 희망찬 기해(己亥)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부터 돼지는 행운과 재복을 상징하는 동물로, 황금은 재물의 대명사로 알려져 왔습니다. 이러한 황금돼지의 기운을 받아 새해에는 우리 전문건설 가족 모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 드리며, 아울러 새해에는 건설산업의 활력이 되살아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전문건설 가족 여러분! 지난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흔들림 없이 많은 일을 잘 해냈습니다. 전국 건설인 호소대회 참여, SOC 예산 증액, 건설산업 혁신방안 국회통과 등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고민하고 현장에서 헌신해주신 회원사 여러분의 노고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전문건설 가족 여러분!

2019년은 여느 해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세계 경제 둔화와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강화, 금리 인상의 여파 그리고 건설업종 개편 논의와 하위법령 정비 등으로 우리 전문건설업계는 또 다른 시련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중앙회는 비상한 각오와 겸허한 자세로 회원사 여러분과 하나가 되어 우리 업계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SOC 등 공사물량 창출 확대, 불법·불공정 행위 개선 및 전문건설업계의 신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을 것입니다.

또한, 작년 말 우리 업계가 종합공사 원도급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국토부는 본격적으로 업종개편 방안과 하위법령 정비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에 중앙회는 회원사의 의견수렴과 업종개편 연구용역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하위법령 정비와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하여 건설산업 혁신방안이 우리 전문건설업계의 지속 발전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전문건설 가족 여러분!

역경을 딛고 일어설 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위대하고 존경받습니다. 손가락 마비를 극복하고 위대한 피아니스트로 거듭난 '알렉산더 슈만', 청각장애를 딛고 뛰어난 걸작을 세상에 남긴 '베토벤'이 대표적입니다.

우리 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위험과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함께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같은 목표를 세우고, 뜨거운 열정을 결집하여 도전한다면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라는 두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기회는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내는 것이다'라는 말처럼 위기를 자양분 삼아 희망의 싹을 틔우고 미래로 나아갑시다.

저의 눈과 귀를 항상 열어 두겠습니다. 회원사 여러분께서도 우리 업계가 재도약하는 내일을 맞을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회원사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과 사업번창을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함께 재도약하는  
내일을  
만들어 갑시다.

김 영 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



# 01

## 신년사 MESSAGE

### 동북아해양수도 부산을 향해 함께 걸어나갑시다.

오 거 돈  
부산광역시장



존경하는 전문건설인 여러분! 2019년, 황금되지해라는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설 산업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해 오신 건설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시는 건설인 여러분의 이러한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또한 함께할 것입니다.

이에 부산시는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숙원사업인 '경부선 철로 지하화'와 '부전 복합역 개발' 타당성 용역비 등을 확보하여 도심 대개조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외 주요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대거 확보하였으므로 올해 지역 건설업계의 수주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건설인 여러분!

올해 우리 시는 건설산업 활성화는 물론, 갈수록 위상이 위축되고 있는 부산의 경제체질을 바꾸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부산을 대개조하여 해묵은 갈등해소 방안을 찾아 나갈 것이며, "해양수도부산"의 슬로건에 맞게 항만, 금융, 의료관광 등 분야에 희망벨트를 조성하여 지역사회와 경제계가 건설하고 건강한 길로 가는 돌파구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이 흐름에 있어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모든 산업의 근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건설 분야일 것입니다.

이제 건설산업은 더욱더 자생력을 키우고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SOC, 해양·항만·물류 등 부산 전문건설업만의 특성화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시에서도 중소기업 Scale up 확대, 중앙1군 건설대기업과의 네트워크 강화 및 지역업체 홍보 확대 등을 통해 지역업체의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무한경쟁사회에 기술력(R&D) 없이 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건설인 여러분들께서는 신기술 개발과 함께 해외시장 개척 등,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키워 현재에 머무르지 말고 미래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2019년은 '동북아해양수도 건설'의 발판을 마련하는 해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2030 등록엑스포 부산유치'는 물론, 유라시아 거점공항이 될 '동남권 관문 공항 건설 유치'를 반드시 이루어내며, '국내외 R&D 기업 유치' 등 지역의 역량을 키워서 부산의 저력과 가능성을 높여나갈 것입니다.

희망의 2019년을 만들어 가는 데 건설인 여러분께서 늘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부산 시도 건설인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부푼 기대와 새로운 희망을 안고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기쁨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고 바라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무엇보다 원대한 목표를 세웠든지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든 올 한 해도 우리 모두가 자신이 나아가야 할 길을 뚜벅뚜벅 힘차게 걸어 나갔으면 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는 너 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경제는 어렵고 민생은 고달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새해 경제전망도 그다지 밝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민간공사 수주물량 감소로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로 압니다.

하지만 전문건설인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불굴의 투지, 무한한 긍정의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살을 에는 듯한 삭풍(朔風)이 항상 부는 것은 아닙니다. 소나기도 하루 종일 오지 않습니다. 어려움 뒤에는 반드시 기회가 오기 마련입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도 미래지향적인 풍토 위에 21세기형 전문건설업의 미래 도약을 힘차게 이끌어 주시는 김세원 회장님과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가 더 큰 역할을 펼쳐 나가시길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새해에도 제8대 의회는 소통은 넓게, 고민은 깊게, 책임은 높게, 행동은 빠르게 해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들은 오로지 '부산', 오로지 '시민'이라는 하나의 방향에 따라 이루어지며,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부산의 체질개선과 질적 성장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지역경제 및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새해에도 더욱 뜨거운 열정으로 회원사 모두가 지금의 어려움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빛나는 성공과 보람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더욱 뜨거운  
열정으로 빛나길  
기원합니다.

박인영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 01

## 신년사 MESSAGE

### 소통으로 더 큰 화합과 발전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 김석준

부산광역시 교육감



2019년 기해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1,900여 회원사의 권익과 21세기 새로운 건설문화 창조를 이끌어 갈 소식지 '코스카레터' 제19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회원사와 소통하는 열린 협회, 단합과 협력으로 하나 되는 협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김세원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는 1985년 창립 이후 전문 건설 사업자의 권익 증진에 힘쓰며, 건설 산업 관련 제도 개선과 전문 건설 기술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계속되는 경제 불황 속에서도 부산경제의 활성화와 국민 경제 발전에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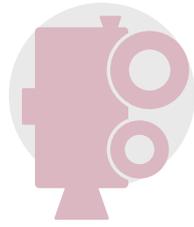
아울러, 그동안 대한전문건설협회 여러분께서는 부산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부산교육을 더욱 알차고 풍요롭게 해주셨습니다. 매년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 지원뿐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학생 중심의 친환경적인 교육시설 공사에도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학생들이 창의성과 다양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학교 공간을 교수학습뿐만 아니라 다양한 삶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공간의 재구조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소중한 소식지인 '코스카레터'가 건설인 여러분 모두에게 적극적인 소통의 통로가 되어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의 더 큰 화합과 발전을 이끌어 주길 기대합니다. 황금돼지의 해 2019년에는 우리 부산 건설업계의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 건설업의 새로운 부흥으로 풍요롭게 번영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회원 여러분!  
새해에도 더욱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Featuring Movie



1관

## 극한직업

개봉 | 2019.01.23.  
 감독 | 이병헌  
 출연 | 류승룡, 이하늬, 진선규, 이동휘, 공명

### 낮에는 치킨장사 밤에는 잠복근무!

불철주야 달리고 구르지만 실적은 바닥, 급기야 해체 위기를 맞는 마약반.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고반장(류승룡)은 국제 범죄조직의 국내 마약 밀반입 정황을 포착하고 장형사(이하늬), 마형사(진선규), 영호(이동휘), 재훈(공명)까지 4명의 팀원들과 함께 잠복 수사에 나선다. 마약반은 24시간 감시를 위해 범죄조직의 아지트 앞 치킨집을 인수하게 되고, 뜻밖의 절대미각을 지닌 마형사의 재능으로 맛집으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다. 고반장은 맛집 사장님으로, 만능 해결사 장형사는 철두철미한 홀 서비스 매니저로, 마약반의 사고뭉치 마형사는 절대미각 주방장으로 거듭나며 하루하루를 보낸다. 수사는 뒷전, 치킨장사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진 마약반에게 어느 날 절호의 기회가 찾아오는데... 범인을 잡을 것인가, 닭을 잡을 것인가.



2관

## 행맨

개봉 | 2019.01.24.  
 감독 | 자니 마틴  
 출연 | 알 파치노, 칼 어번, 브리타니 스노우

### 밤 11시가 되기 전, 반드시 다음 살인을 막아야 한다!

밤 11시, 어김없이 오늘도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알파벳 문양의 칼자국이 새겨져 목을 맨 채 발견된 시체들. 의문의 연쇄살인마는 현장에 다음 희생양에 대한 힌트를 남기고, 마치 게임을 걸듯 두 명의 형사를 지목한다. 아내를 잃은 현직 형사 '루이니'(칼 어번),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전직 형사 '아처'(알 파치노), 이 사건을 끝까지 추적해야 하는 기자 '크리스티'(브리타니 스노우). 범인은 마치 자신을 따라오라는 듯 피해자가 발생할 때마다 조작된 현장에 알파벳을 하나씩 남기고, 영화는 이러한 단서를 따라 범인을 추적하는 형사들의 모습을 긴박감 넘치는 스토리 전개를 그려냈다. 희생자가 늘어날수록 점점 채워져 가는 행맨 게임의 알파벳. 세 사람은 연쇄살인마가 주는 힌트를 따라 살인보다 빠르게 다음 희생양을 예상해야만 한다.

## 협회 소식

### ❖ 제회의 및 행사



#### 2018년 해외선진건설현장 시찰

부산시회는 회원사 대표 및 임원 등 총 51명이 참가한 가운데 10월 22일부터 10월 29일까지 6박 8일간 뉴질랜드의 남섬과 북섬의 빙하 및 화산지형과 주요 건축물 등을 둘러보고 그곳의 문화를 체험하는 「2018년 해외선진건설현장 시찰」을 실시했다.

시찰단은 뉴질랜드 남섬의 퀸스타운을 시작으로 19세기 골드러시로 인해 형성되어 지금까지도 서부시대의 건축양식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애로우 타운'과 세계적인 빙하지형인 '피오르드, 아오라키 국립공원' 등을 시찰하였으며, 북섬으로 이동하여 영국 튜더양식의 건축물인 '로토로아 박물관' 등을 둘러보았다. 특히, 남섬의 크라이스트 처치에서는 2011년 대지진으로 인해 파괴된 대성당 등의 보수공사 현장을 둘러보면서 건축물의 내진설계의 중요성과 함께 건설인으로서 성실시공의 책임의식을 다시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해외선진건설현장 시찰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제화시대를 맞아 해외 우수건축물, 지진 등 자연재해를 통해 본 건축기술의 중요성 및 건설인의 역할 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중요한 경험이 되었으며, 회원사의 전문을 넓히고 회원 상호 간의 정보교류와 협회 발전을 위한 단합의 장을 마련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 2018회계연도 제2차 부산전문건설기술위원회의

부산시회는 10월 30일(11:00 / 협회 회장실) 회장 및 기술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회계연도 제2차 부산전문건설기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4월 개최되었던 제1차 기술위원회의 건의사항 및 조치결과를 설명하고, 초미립자 시멘트와 무포장 이송설비, 개인주택 옥상 물탱크 철거 및 개선방법 등을 협의했다.



### 2018회계연도 모니터 회의

부산시회는 11월 1일(11:30 / 골든뷰 뷔페) 회장단 및 감사, 모니터링단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회계연도 모니터 회의」를 개최했다.

김세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협회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설문조사는 회원사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 발굴과 제도개선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회원사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모니터 활동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부산전문건설 모니터 활동에 대한 추진경과 보고와 모니터와의 대화를 통해 전문건설업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그동안 설문조사 등 모니터 활동에 적극 참여한 우수 모니터에 대한 포상도 실시했다.



### 제2차 건설분야 전문가 법률상담 등 무료자문

부산시회는 11월 1일(14:00 / 협회 회의실) 회원사의 고충해결과 당면한 애로사항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도움을 주기 위해 「건설분야 전문가 법률상담 등 무료자문」을 실시했으며, 회원사 임직원 20여 명이 참여해 법률·노무 분야에 대해 도움을 받았다.

이날 상담에서는 부산시회 이윤근 자문변호사가 발주자 및 원도급사와의 분쟁에 대한 법적 대처방안 등에 대해 상담했으며, 여찬모 자문노무사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응방안,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관리, 4대 사회보험 및 퇴직금 분쟁 등 노무분야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상담했다.



### 건설공사 전자입찰 실무 강습회

부산시회는 11월 9일(14:00 / 부산일보 10층 대강당) 회원사 소속 임직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공사 전자입찰 실무 강습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습회에서는 건설공사 전자입찰 관련 투찰금액 산정방법, 낙찰 성공률 높이는 방법, 적격심사 활용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으며,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한편, 부산시회는 이날 강습회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사를 위해 강습회 교육교재와 강의 동영상을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에 게재해 회원사들이 수시로 활용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2018회계연도 신규회원 간담회

부산시회는 11월 15일(11:00 / 골든뷰 뷔페) 2018회계연도에 협회 회원으로 가입한 신규회원사 대표 및 임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회계연도 신규회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세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신규회원으로 가입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협회의 각종 행사에도 함께 참여하여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면서 침체된 국내 건설경기를 협회와 함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격려했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규회원들을 위해 협회의 역할과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책무와 신고사항 등이 수록된 「전문건설업 신규회원 업무편람」 책자에 대해 설명(강사: 한중석 사무처장)하고, 회원사와의 대화시간을 통해 건설업을 유지하면서 겪게 되는 애로사항과 문제점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 2018회계연도 제4차 전문건설인 조찬세미나

부산시회는 11월 27일(07:00 / 부산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 회원사 대표 및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제4차 전문건설인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조찬세미나에는 부산외국어대학교 김진영 교수를 초빙하여 “제자백가 산책!”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강연이 끝난 후 부산시회에서는 감사의 뜻으로 김진영 교수에게 ‘감사의 글’과 ‘캐리커처’를 전달했다.



### 2018회계연도 제2차 업종별 운영분과위원장 회의

부산시회는 11월 28일(12:30 / 허심청 어가) 회장단, 감사, 업종별 운영분과위원장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제2차 업종별 운영분과위원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18년 회원사 업역확대 추진실적과 연말 협회 주요일정을 보고하고, 건설산업 생산 구조 혁신 로드맵 관련 주요 내용 등 협회 주요 현안을 협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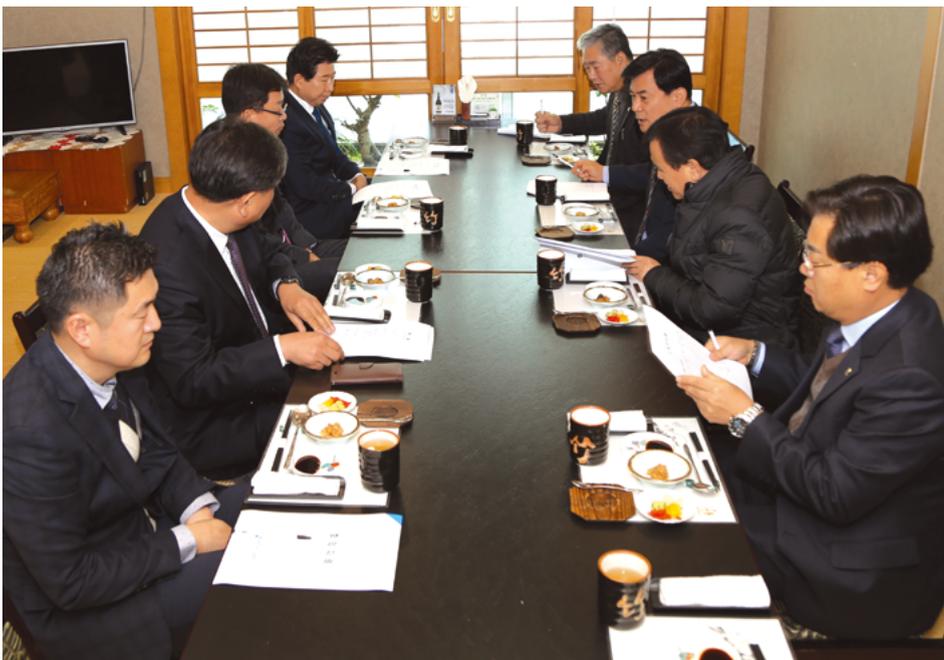


### 2018회계연도 제3차 운영위원회의 및 제2차 임원연석회의

부산시회는 12월 11일(10:30 / 허심청 어가) 「2018회계연도 제3차 운영위원회의 및 제2차 임원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의에서는 운영위원 및 감사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궐선출된 송유경 부회장(경남종합조경 대표) 인준서 및 최상대 운영위원(주)우성엔지니어링개발 대표), 정석봉 운영위원(주)공간조경 대표) 선임장을 수여하고, 중앙회 제34회 정기총회 포상대상자 추천(추인)의 건, 부산광역시 2018년 자랑스러운 건설인상 포상대상자 추천(추인)의 건, 예산과목(항간) 전용의 건 및 제11대 중앙회대의원 보궐선출의 건을 의결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안건 심의를 마친 후 개최된 제2차 임원연석회의에서는 임원 3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하반기 협회 주요업무 보고하고, 건설산업 생산 구조 혁신 로드맵 등 협회 위상 제고를 위한 주요 현안사항을 협의했다.



### 2018회계연도 제2차 회장단 회의

부산시회는 12월 12일(11:30 / 범일동 다계) 「2018 회계연도 제2차 회장단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회장단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현황 및 2018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접수일정 등을 보고하고, 협회 주요 현안사항 등을 협의했다.



### 2018년 건설(전문)공사 실적신고 및 건설업자 의무사항 강습회

부산시회는 12월 13일(14:00 / 부산시민회관 1층 대강당) 회원사 임직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건설(전문)공사 실적신고 및 건설업자 의무사항 강습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강습회에서는 실적신고서 작성방법 및 주의 사항, 실적신고 프로그램 사용방법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며, 건설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건설업자의 의무와 하도급자 보호제도 등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졌다.

한편 부산시회는 이날 참석하지 못한 회원사를 위해 강의 동영상 및 교육교재를 인터넷 홈페이지([www.kosca21.or.kr](http://www.kosca21.or.kr)) ⇒ 회원전용공간 ⇒ 교육교재에 게재하여 회원사에서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 ❖ 회원사 수주지원 및 확대를 위한 간담회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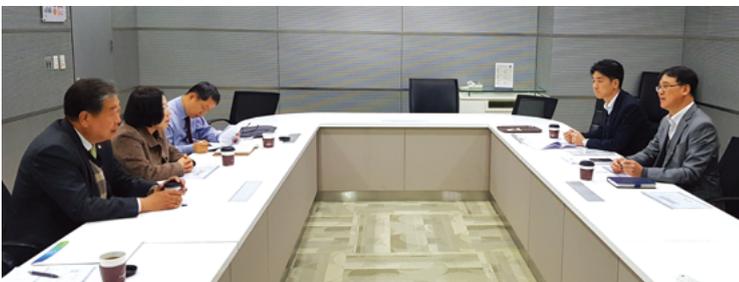


### 건설대기업 본사 방문 및 간담회

부산시회는 10월 17일부터 10월 19일까지(3일간), 11월 29일 두 차례에 걸쳐 부산시 하도급관리팀과 합동으로 수도권 지역에 본사를 둔 지에스건설(주), 롯데건설(주), 신세계건설(주), 아이에스동서(주), 고려개발(주), (주)포스코건설을 직접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

부산시회와 부산시 하도급관리팀은 간담회를 통해 “최근 부산지역의 재개발·재건축 도시 정비사업은 그 어느 때보다 활성화되고 있어 지역 시민단체와 언론기관의 관심이 매우 높다”며, “부산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부산전문건설업체의 협력업체 등록 및 입찰참여 기회 확대로 부산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에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지원”을 당부했으며, “안전사고 예방과 하도급불공정거래행위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업체들은 “협회와 부산시가 수도권 지역에 있는 본사까지 방문해 부산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만큼, 우수한 부산전문건설업체를 발굴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부산지역 대형건설현장 민·관 합동 하도급실태조사 실시

부산시회는 11월 20일부터 11월 23일까지 4일간에 걸쳐 부산광역시와 합동으로 지역 내 9개 재개발·재건축 등 대형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건설부조리 및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확인 및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건설업 무등록자에 대한 불법하도급 등 건설부조리와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특약 설정 등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점검과 이의 사전예방을 위해 실시한 것으로 부산광역시에서 위촉한 공정하도급 옴부즈만도 함께 참여하여 공사현장의 안전 및 품질관리 등을 점검했다.

한편, 부산시회는 공종별 우수 전문건설업체 추천이 필요할 경우 협회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안내하고, 시공현장에서 불법·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 부산광역시교육청 김석준 교육감 간담회

부산시회 김세원 회장 및 회장단은 11월 20일(17:00 / 부산광역시 교육감실) 부산광역시교육청을 방문해 김석준 교육감을 비롯한 건설관계관과 간담회를 갖고 부산전문건설업체의 건설공사 수주지원 및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부산시회 김세원 회장은 “중·소 전문건설업체 보호·육성과 건설공사 품질향상·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를 확대하고 전문건설업 업역 보호와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4억원 미만의 소규모 복합공사는 건설공사의 실시공자인 전문건설업체에게 발주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부산광역시 김석준 교육감은 “초저가 하도급 등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를 확대하고, 4억원 미만 소규모 복합공사는 전문공사로 발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 부산광역시시장 및 건설관련단체장 오찬 간담회 참석

부산시회 김세원 회장은 12월 11일(12:00 / 부산광역시청 26층 회의실) 「부산광역시시장 및 건설관련단체장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전문건설업계의 현안사항과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부산광역시 오거돈 시장을 비롯한 유재수 경제부시장 등 건설관계관과 대한건설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부산시회 단체장이 함께 자리했다.

부산시회 김세원 회장은 “건설경기 침체로 지속적으로 민간공사 수주물량이 감소되고 있어 건설업계에서는 일감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계의 어려움을 부산광역시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부산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공공사 뿐만 아니라 민간 대형건설공사에 보다 많은 부산전문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의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당부한다”고 했다.

이에 오거돈 부산시장은 “부산경제 및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향후에도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건설업계에서도 다양한 기술개발 등으로 대외 경쟁력과 자생력을 키우는 데 노력해 달라”고 했다.



### 부산시의회 박인영 의장 간담회

부산시회 김세원 회장 및 회장단은 12월 12일(11:00 / 부산시의회 의장실) 박인영 의장과 간담회를 갖고 전문건설업계의 현안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김세원 회장은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민간공사 수주물량 감소로 부산전문건설업체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지역 건설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추진과 지속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했다.

이에 박인영 의장은 “부산시회의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지역경제 및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건설업체에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부산광역시와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 ❖ 회장동정



### KOSCA 해외선진건설시장 조사단 동남아 건설현장 시찰

김세원 부산시회장(중앙회 부회장)은 대한전문건설협회 해외시장 조사단에 참여하여 12월 3일부터 4박 6일 동안 싱가포르와 베트남 건설시장을 둘러봤다.

김영운 중앙회장, 김세원 부산시회장을 비롯한 조사단 17명은 싱가포르에서 우리나라 종합 전문 건설업체가 상생 협력하는 시공현장을 방문하고, 베트남에서는 베트남건설협회(VACC)와 세미나, 박람회, 현지 업체 건설현장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길지 않은 일정이었지만, 우리 건설업체들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점검하고 모색해 보는 계기가 됐다.

### 서울 동작경찰서 방문 및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금 전달식 참석

김영운 중앙회장, 김세원 부산시회장(중앙회 부회장)을 비롯한 중앙회 회장단은 12월 13일 서울 동작경찰서를 찾아 한파 속에서 관내 치안유지에 애쓰는 경찰관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동작서가 선정한 강력범죄 피해자 5명에게 각각 40만원씩 지원금을 전달하고 향후 매년 지원을 약속했다.



❖ 회원소식



2018년 제3차 부산전문건설인 단합산행

부산시회는 11월 8일 회원사의 단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2018년 제3차 부산전문건설인 단합산행」을 실시했다.

이번 산행은 경남 거제시 장승포에서 유람선을 타고 뱃길로 20분 거리에 있는 지심도 선착장에서 출발해 능선을 타고 동백나무터널을 지나 일본군 유적지를 돌아오는 코스로 진행됐다. 비가 오는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드넓은 바다와 해안절벽, 단풍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절경을 감상하며, 회원사들은 서로를 격려하고 우의를 다지는 등 협회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대동녹지건설(주) 강완수 회장 2018년 부산광역시 아름다운 조경상 대상 수상

부산시회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공사 전문건설업체인 대동녹지건설(주)이 시공한 '연제 롯데캐슬 데시앙 아파트 조경'이 '제6회 부산광역시 아름다운 조경상' 대상을 수상했다.

대동녹지건설(주)의 강완수 회장은 제1회 대상, 제2회 우수상에 이어 세 번째 수상의 영예를 누리게 되었다. 2011년에는 대한민국 '올해의 조경인' 상을 수상하였고, 2017년에는 '건설업 윤리경영대상'을 수상한 바가 있으며, 서울대 환경대학원, (사)한국조경사회 등에 기부활동 또한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부산지역의 대표적인 조경 건설인이다.

부산시는 '연제 롯데캐슬 데시앙 아파트 조경'이 주변과 어우러지는 스카이라인, 다양한 활동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정원, 단지를 하나로 연결하는 오픈스페이스,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텃밭 정원 및 풍부한 녹음과 다채로운 수경관, 외곽을 따라 녹음을 한번에 둘러볼 수 있는 순환동선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으며, 수상 현장에 기념동판을 제작·부착해 아름다운 조경현장들을 시민들에게 홍보할 예정이다.



대동녹지건설(주) 강완수 회장



## ❖ 사회공헌활동

### 2018년 사랑의 연탄나눔 성금 전달 및 연탄배달 봉사활동 실시

부산시회는 11월 7일 회원사 대표 및 임직원, 사무처 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동 '매죽지 마을'의 독거노인과 재가 장애인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40여 가정을 대상으로 연탄 20,000장(1,200만원 상당)을 직접 배달하는 「2018년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가졌다.

이날, 부산시회 김세원 회장은 "지역의 소외계층과 어려운 이웃에게 부산전문건설인의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어 조금이나마 훈훈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하게 되었다"며, "오늘 함께 뜻을 모아 참여해 주신 회원사 대표 및 임직원과 협회 사무처 직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나눔과 봉사를 통해 협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의 동반자로서 공동번영의 가치를 함께 실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 지원금 전달**

부산시회는 11월 20일 부산광역시교육청을 방문하여,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 지원금 1,000만원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에게 직접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지원금은 부산광역시교육청과의 교육결연활동의 일환으로 학습환경과 생활환경이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을 돕기 위한 무상급식비로 사용되며,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보다 폭넓은 학습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회는 그동안 지역 교육환경 개선과 저소득층 학생을 돕기 위한 교육메세나 활동을 2011년부터 꾸준히 전개하며, 협회의 사회적 책임과 나눔 문화 확산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남구 관내 소외계층 김장나눔 지원금 전달**

부산시회는 11월 22일 용호2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남구 관내 8개 동 부녀회에서 추진하는 소외계층 김장나눔 행사에 지원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김세원 회장은 “지역의 소외계층과 어려운 이웃에게 부산전문건설인의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어 조금이나마 훈훈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남구 관내 8개 동 부녀회에서 추진하는 김장나눔 행사에 동참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나눔과 봉사를 통해 협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의 동반자로서 공동번영의 가치를 함께 실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관 등 3곳 생필품 전달 및 마술 재능기부 공연

부산시회는 11월 28일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관(연제구 소재)을 방문하여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하소연), 동구장애인복지관(관장 이재영), 부산뇌병변복지관(관장 이주은)” 이상 3곳의 기관에 1,000만원의 생필품을 구입하여 전달했다.

김세원 회장은 이 자리에서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많이 부족하여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잘 알고 있기에, 협회는 앞으로 도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건설경제단체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나눔과 봉사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성금 전달식에 이어 협회 회원사인 (주)현대금속 이종덕 대표이사의 마술재능기부 공연인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와 함께하는 수리수리마수리 매직쇼”가 개최되어 장애인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 부산광역시 금정구 이웃돕기성금 전달

부산시회는 12월 14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구청장 정미영)을 방문하여 “행복충전 희망나눔 사업,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로 성금 300만원을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달했다.

김세원 회장은 이 자리에서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손길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협회는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건설경제단체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항상 나눔과 봉사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 부산광역시 중구 이웃돕기성금 전달

부산시회는 12월 20일 부산광역시 중구청(구청장 윤중서)을 방문하여 중구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따뜻한 겨울나기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을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김세원 회장은 협회가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건설경제단체인 만큼,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사회 나눔과 봉사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 제11회 교육메세나탑 수상

부산시회는 12월 20일 부산상공회의소 2층 상의홀에서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 등 4개 기관이 주관한 제11회 교육메세나탑 수여 및 결연 감사행사에서 오거돈 부산시장 및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으로부터 교육메세나 감사패를 수상했다.

부산시회의 이번 수상은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 지원 등 지역사회 발전과 교육 기부운동에 적극 참여한 데 따른 것으로 부산시회는 그동안 지역 교육환경 개선과 저소득층 학생을 돕기 위한 교육메세나 활동을 2012년부터 꾸준히 전개해 협회의 사회적 책임과 나눔문화 확산에 많은 기여를 해왔으며, 앞으로도 어려운 학생 등을 위한 지속적인 나눔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하루하루를 쳇바퀴처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잠시나마 쉬어갈 수 있는 영혼의 안식처이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틈틈이 읽을 만한 베스트셀러를 소개한다.



※ 베스트셀러 순위는 '반디앤루니스의 12월 다섯째 주 판매량과 주문 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1위>는 어린이도서 『추리 천재 엉덩이 탐정 7』로 추천 도서 목록에서 제외했습니다.

글 송정은



##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

헤민 | 수오서재 | 15,000원

헤민 스님의 마음돌봄 3부작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이 책은 분주하고 복잡하고 소란한 세상, 그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나 자신을 잃어가는 현대인들을 위한 메시지를 담았다. 마음이 고요해질 때 비로소 드러나는 내 안의 소망, 진정 꿈꾸는 삶의 방향과 가치를 찾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고요함은 나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저자의 말처럼 나 자신을 찾고 싶은 이들에게 이 책은 '나에게로 가는 길'의 안내서가 되어줄 것이다.



## 트렌드 코리아 2019

김난도 | 미래의창 | 17,000원

김난도 교수는 2019년의 소비 흐름을 “원자화·세분화하는 소비자들이 환경변화에 적응하며 정체성과 자기 컨셉을 찾아가는 여정”이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했다. 1인 마켓(세포마켓), 밀레니얼 가족의 등장이 시장을 바꾸고 있다. 자기만의 기준으로 세상을 사는 나나랜드부터 갑질 근절과 환경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매너 소비'와 '필(必)환경' 또한 중요한 키워드로 꼽혔다.



# BESTSELLER BOOK



## 아가씨와 밤

기욤 뫼소 | 밝은세상 | 14,500원

BEST  
4

기욤 뫼소의 근래의 작품들은 기존의 장점에 탄탄한 구성, 인간심리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 강렬한 서스펜스가 가미된 스릴러 소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아가씨와 밤》 또한 흥미진진한 스토리로 독자들을 사로잡는다. 소설의 배경은 기욤 뫼소가 나고 자란 프랑스 코트다쥐르의 앙티브이다. 이 소설의 화자인 토마의 직업이 작가로 되어 있어 자전적 소설로 이해하기 쉽지만 <작가의 말>을 통해 완전 허구에 기반을 둔 작품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 12가지 인생의 법칙

조던 B. 피터슨 | 메이븐 | 16,800원

BEST  
5

전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가 밝혀낸 《12가지 인생의 법칙》은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치워라’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만 만나라’ 같은 인생의 진리를 심리학, 생물학, 신화, 철학, 종교 등을 바탕으로 써내려간 책이다. ‘인생은 고통이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을 길은 있다’라고 말하는 이 책은 고된 삶에 무너지지 않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지혜를 12가지 법칙에 담아 전하고 있다.

## 건설공사 수주지원 및 제도개선사업

### 수주지원

#### ❖ 부산지역 재개발·재건축 도시정비사업 참여 시 용적률 인센티브 안내

##### 재개발·재건축 도시정비사업 참여 시 적극 활용하세요

부산시회는 10월 8일 건설대기업(종합건설업체)을 대상으로 부산지역 재개발·재건축 도시정비사업 시공참여 시 부산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참여율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제도에 대해 안내했다.

부산지역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등 민간공사의 경우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이며, 특히 일부 수도권 종합건설업체에서는 부산지역 공사임에도 부산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참여율이 0%에 가까운 정도로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부산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율(계획 수립 및 이행)에 따라 최대 5%의 추가 용적률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시공사로 선정되는 데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 것이다.

#### ❖ 재개발·재건축 도시정비사업 부산전문건설업체 하도급참여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홍보

#####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 적극 홍보 건의

부산시회는 10월 31일 부산지역 16개 구·군청 건축과를 대상으로 부산지역 재개발·재건축 도시정비사업에 부산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율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제도에 대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 적극 홍보해 줄 것을 건의했다.

부산시회는 부산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율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인센티브 제도를 알지 못하는 조합이 많은 실정으로 동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로 재개발·재건축 도시정비사업에 보다 많은 부산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 공사에 참여될 수 있도록 추진한 것이다.

또한 부산시회는 11월 29일 개최된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에 참석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명단을 건설관련 단체에 통보해 줄 것과 부산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동 인센티브제도의 적극적인 홍보도 함께 요청했다.

#### ❖ 2018년 하반기 발주예정 종합공사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추진

부산시회는 11월 2일 부산광역시 및 산하 구·군청, 교육청 등 130여 부산지역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2018년 하반기 발주예정 공공공사 중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종합공사를 발주할 경우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부산시회의 이번 건의는 종합건설업체의 초저가 하도급을 포함한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근절시켜 실시공자인 전문건설업체를 보호하고 회원사의 건설공사 수주지원 및 적정공사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 ❖ 「동래 래미안 아이파크 신축공사」 부산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추진

부산시회는 12월 10일 「동래 래미안 아이파크 신축공사」에 보다 많은 부산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및 시공사【HDC현대산업개발(주), 삼성물산(주)】를 대상으로 협조를 요청했다.

부산지역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그 어느 지역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공사를 수도권 지역의 중앙 1군 종합건설업체들이 도급받아 자사 연고지의 전문건설업체(협력업체)에게 하도급함에 따라 부산전문건설업체들은 건설공사 수주물량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부산시회는 부산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건설근로자 고용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동래 래미안 아이파크 신축공사」에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가 70% 이상 하도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한 것이다.

한편, 부산광역시에서는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참여율이 70% 이상 될 수 있도록 권장함과 동시에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을 변경·고시하여 부산지역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부산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율에 따라 최대 5%의 추가 용적률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시행하는 등 협회와 함께 지역 건설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 조경식재공사 유지관리 개선방안 준수 추진

### 「조경식재공사 유지관리 개선방안」 실질적 적용을...

부산시회는 12월 10일 부산광역시(녹색도시과)에 조경식재 유지관리비 별도 계상을 위한 「조경식재공사 유지관리 개선방안」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조경공사 설계지침서에 반영하고, 구(군)청 및 사업소 등에 업무지침 시달 및 주기적 점검을 강화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부산시회에서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 상정 안건으로 건의한 조경식재공사 유지관리비 별도 계상 의견을 반영하여 「조경식재공사 유지관리 개선방안 추진계획(산림복지과-15150, 2015. 08. 17)」을 마련하고, 2015. 08. 21. 부산광역시 산하 구(군)청 및 관계기관에 문서를 시달한 바 있다.

### ○ 조경식재공사 유지관리 개선방안 주요 내용

- **적용대상:** 식재공사비 1억원(직접공사비 기준) 이상
- **예산편성:** 시·주관부서(조경식재공사 준공 후 수목유지관리 부서)
- **예산규모:** 총 식재공사비의 5% 이내(2년간)
- **공사기간:** 조경식재공사 준공 후 2년간(하자보수 기간)
- **시행방법:** 본공사 준공 후 유지관리공사 별도 발주 시행  
 ※ 하자책임 일원화를 위해 본공사 시공업체와 수의계약 조치(수의계약 범위 초과 시 공개입찰)
- **적용시기:** 2016년도 준공예정 공사부터 적용

## 건설공사 수주지원 및 제도개선사업

그러나 구(군)청 및 사업소 등에서는 예산의 부족, 행정업무 과다 등의 이유로 조경식재공사 유지관리 별도 발주 대상공사(조경식재공사비 1억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조경식재 유지관리 개선방안」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조경식재 공사 준공 후 발주기관의 수목관리 미흡으로 발생한 고사목까지 하자로 주장하고 있어 발주기관과 조경식재공사업체 간 분쟁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도 시공업체인 조경식재공사업체가 떠맡고 있다.

이에 조경식재공사업체들의 적정공사비 확보와 하자책임 분쟁에 대한 민원 해소, 수목의 집중관리로 조경품질 향상 등을 위해 「조경식재공사 유지관리 개선방안」을 준수하여 줄 것을 건의한 것이다.

### ❖ 하도급불공정 행위 사전 예방을 위한 건설관련 법령 준수 추진

#### 공공 발주기관이 앞장서 법령 준수해야...

부산시회는 11월 27일 부산지역 주요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하도급불공정 행위가 사전 예방될 수 있도록 공공 발주기관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점검사항을 준수하여 줄 것을 안내했다.

부산시회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여부 확인, 하도급 통보 시 부당특약 유형 점검, 설계변경 내용 하수급인 통보 및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 확인 등의 발주기관으로서의 의무 점검사항을 준수하여 하도급자가 보호되고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 사전 예방을 통한 건전한 건설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도급 계약관련 서류 점검 철저 등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여부 확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①~⑥ (생략)
- ⑦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제2항에 따른 보증서를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2. 하도급 통보 시 부당특약 유형 점검 의무

#####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불공정행위의 금지)】

- ①~② (생략)
- ③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로서 제29조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하도급계약 등에 제2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 등의 내용변경을 요구하고,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8(부당특약의 유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 3. 설계변경 내용 하수급인 통보 및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 확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 ① (생략)
- ② 발주자는 발주한 건설공사의 금액을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수급인에게 조정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제29조 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다시 하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6(공사금액 조정사유 등)】**

- ① (삭제)
- ② 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발주자가 설계변경 등에 따라 수급인에게 공사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③ (생략)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0조(공사금액 조정에 관한 통보)】**

- ① (생략)
- ② 발주자는 제1항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으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해당 공사금액 조정내용에 대하여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4. 하도급대금 대물변제 원칙적 금지 홍보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 ①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 2. 원사업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 3. 그 밖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 ②~③ (생략)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4(대물변제 인정사유)】**

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서 “그 밖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원사업자에 대하여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를 말한다.

## 건설공사 수주지원 및 제도개선사업

### ❖ 건설업 무등록시공 근절 추진

#### 건설업 무등록 시공 근절 홍보문 시·구(군),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에 게재 건의

부산시회는 12월 10일 부산광역시청 및 16개 구(군)청, 아파트, 공인중개사 협회, 건설업 무등록 시공 협의의 업체 등을 대상으로 건설업 무등록 시공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추진했다. 부산시회는 건설업 무등록자로 인해 건전한 건설거래 질서가 문란해지고 적법하게 등록된 전문건설업체의 건설공사 수주를 방해하고 있음에 따라 전문건설공사를 발주할 경우에는 해당 전문건설업체가 도급받을 수 있도록 추진했다.

또한 건설업 무등록 시공 협의 업체에게는 전문건설업 등록방법과 협회 회원 가입 시의 혜택 등도 함께 안내했다. 부산시회는 건설업 무등록자가 건설시장에서 난립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건설업 무등록 시공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 제도개선

### ❖ 건설공사 발주 시 나라장터에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 등 게재 의무화 건의

부산시회는 11월 7일 공공공사 입찰공고 시 나라장터에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를 의무적으로 게재하여 줄 것을 중앙회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설계서, 물량내역서 등을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이를 열람·교부토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또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체에서는 공공공사는 적정공사비가 보장될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과 시간·인원부족으로 개별 발주기관을 매번 방문할 수 없어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 검토 없이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으로 일부 공공공사의 경우 예산에 맞춘 설계, 현장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 발주 관행으로 인한 설계누락 및 품의할증 미반영 등 적정공사비가 반영되지 않아 이윤은 고사하고 적자시공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부산시회는 건설업체에서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라장터(G2B)에 건설공사 입찰공고 시 입찰공고문과 함께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를 의무적으로 게재토록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한 것이다.

## ❖ 2인 이상 계약문서 작성 시 인지세 납부비율 명확화 건의

부산사회는 11월 15일 원도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에게 인지세 납부를 부담시키는 불공정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인지세법상의 연대책임 규정을 균등 분배토록 개선하여 줄 것을 중앙회를 경유하여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인지세법 제1조에서는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2인 이상이 계약문서를 공동으로 작성하는 경우, 계약당사자간에 연대하여 인지세를 부담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경우 원도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에게 인지세(가산세 포함) 부담을 강요·전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이에 부산사회에서는 인지세 연대책임 규정을 균등분배토록 인지세법 개정을 건의한 것이다.

## ❖ 부산광역시교육청에 전문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상향 건의

부산사회는 11월 30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부산시회 및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부산시회와 함께 부산광역시교육청을 방문해 전문공사 설계 시 반영하는 원가계산 제비율(이윤, 일반관리비 등)의 상향을 건의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원가계산 시 적용하는 제비율(이윤: 9%, 일반관리비: 2.8%, 간접노무비: 5.6%, 기타경비: 3.1%)을 부산지역의 타 공공기관 및 타 시·도 교육청보다 현저히 낮게 반영하고 있어 전문건설업체에서는 적정공사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설공사 실시공자인 전문건설업체의 적정공사비 부족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등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국내 건설경기의 침체와 공사물량 부족 등으로 인한 전문건설업체의 경영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부산시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서는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도 전문공사 설계 시 조달청 건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을 반영하여 전문공사를 발주해 줄 것”을 건의한 것이다.

한편,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협회의 건의사항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며, “2019년 예산부터 당장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점진적으로 전문공사의 제비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건설공사 수주지원 및 제도개선사업

### ❖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건의

#### 광역단위 수의계약 참가자격 구·군 제한 금지

부산시회는 11월 22일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광역단위는 수의계약 시 참가자격을 구·군으로 제한할 수 없도록 개선하여 줄 것을 중앙회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는 광역시 안에 자치구와 군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군을 제외한 자치구 소재업체 또는 자치구를 제외한 군 소재업체만을 대상으로 견적제출 대상을 제한(전문공사 1억원 이하, 종합공사 2억원 이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광역시의 경우 자치구와 군이 인접해 있어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좋고 교통이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발주기관에서는 관내 업체에게 도급주기 위한 방법으로 추정가격 1억원 이상 2억원 이하의 전문공사를 종합공사로 발주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건설업체들은 건설공사를 수주받기 위해 실제 사무실은 그대로 두고 공사가 많은 지역으로 위장 전입하거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사례도 있다.

이는 관내 업체 보호라는 명분으로 지역이기주의를 조장하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영역을 위반하여 발주함으로써 건설업종 간 업역분쟁을 야기하고, 더 나아가 건설부조리 행위 등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부산시회는 광역시의 경우에는 수의계약 참가자격을 구·군으로 제한할 수 없도록 이의 개선을 건의한 것이다.

### ❖ 2019년도 건설공사 설계지침서 발간에 따른 의견 제출

#### 공사대금 지급 사실 및 내용 하수급인 통보 등

부산시회는 11월 26일 2019년도 적용 건설공사 설계지침서 개정 의견을 부산광역시에 제출했다. 부산시회의 개정 의견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설폐기물 처리 상차비 반영 명확화
2. 공사대금 지급 사실 및 내용 하수급인에 통보
3.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교부 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4. 하도급 계약자료의 정보 공개
5. 하도급 통보 시 부당특약 유형 점검 의무화

## ❖ 건설기계단가 적정 가격 반영 건의

### 건설기계단체의 일방적인 가격 인상에 대한 대응

부산시회는 11월 26일 건설기계 단가 책정 시 적정 단가가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격인상분과 일일 8시간 미만의 소규모 공사에서의 활동 반영을 중앙회를 경유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부산시회는 최근 일부 건설기계단체에서는 유류비 상승과 건설기계·장비의 유지·보수 및 구입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일방적인 가격 인상을 시공업체에 통보함으로써 다수의 건설기계·장비를 사용하는 포장공사업 전문건설업체들로부터 기업 경영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건설기계 단가의 적정 반영을 건의한 것이다.

## ❖ 관급 아스콘 자재 납품 정상화 협조 요청

### 아스콘 공급업체 선정 방식 개선 등 협조

부산시회는 11월 27일 관급 아스콘 자재 납품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부산·울산·경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에 협조 요청했다. 부산지역 포장공사 업체들은 관급공사를 수행할 경우 아스콘공업협동조합 내 조합원들 간 순번제로 공급업체가 선정됨에 따라 아스콘 자재의 납품 지연, 품질 저하 등으로 인한 공기 지연 및 공사원가 상승 등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공업체인 포장공사업체들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민원이 부산시회에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부산시회는 아스콘공업협동조합에 포장공사의 원활한 수행과 양질의 아스콘 자재 납품을 위해 아스콘 공급업체 배정 시 2개 이상의 업체를 배정하는 등 포장공사 시공업체가 아스콘 자재의 신속한 공급과 품질이 우수한 아스콘 공급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협조 요청한 것이다.

## ❖ 건설현장 장애인 고용부담금 적용 완화 건의

부산시회는 12월 10일 건설업의 경우 사업주가 장애인 구인노력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예: 고용노동부 워크넷 및 일간신문 등)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 또는 장애인 고용의무대상 사업주의 범위 및 고용부담기초액을 완화하여 줄 것을 중앙회를 경유해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로써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75억 7천 5백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의무고용률(상시고용인원 대비 1000분의 29, 2019년 이후: 1000분의 31)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사업주에게는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부담기초액: 945,000원을 기준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의 특성상 건설공사현장에는 많은 위험 요소들이 산재해 있어 장애인 고용 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특정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장애인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장애인들조차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건설현장 근무를 꺼리거나 장애를 숨기고 취업하여 산재사고를 유발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회원사에서는 기업 경영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이에 부산시회는 건설업의 경우 사업주가 장애인 구인노력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과 장애인 고용의무대상 사업주의 범위 및 고용부담기초액을 완화하여 줄 것을 건의한 것이다.

## 건설공사 수주지원 및 제도개선사업

### ❖ 조경식재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개선(2년 ⇒ 1년) 건의

부산시회는 12월 10일 조경식재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현실에 맞게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중앙회를 경유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관련 별표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서는 조경식재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경수를 비롯한 각종 수목식재공사는 타 건설공사와는 달리 생물을 식재하는 공사로서 준공 후 1년 동안 사계절의 기후변화를 모두 겪고도 수목이 고사하지 않은 것은 시공하자가 아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에서는 1년이 지나 폭염, 가뭄, 동해 등 이상기후 및 관리 소홀로 인한 수목 고사까지 하자로 보아 조경식재공사업체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해 하자처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부정당업체 제처분에 따른 공공공사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과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을 내세워 일방적인 재식재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이에 부산시회는 조경식재 공사 완료 후 1년 동안 사계절의 기후변화를 겪은 수목이 고사하는 경우는 시공상의 책임이 아닌 이상기후 발생 또는 수목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것이므로 조경식재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현실에 맞게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건의한 것이다.

### ❖ 1개월 이상 단가계약공사 건강·연금보험료 등 반영 추진

부산시회는 12월 19일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건설공사를 단가계약으로 발주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 줄 것을 부산광역시 및 산하 자치단체에 건의했다.

부산시회는 그동안 부산지역 일부 발주기관에서 단가계약공사는 여러 개의 공사현장이 존재하고, 각 현장별 시공에 소요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이유로 관행상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별도로 반영하지 않아 건설업체가 이에 대한 각종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되어 왔다.

이에 부산시회는 이를 개선하고자 국토교통부에 4대 사회보험 적용대상 공사는 계약의 종류가 단가계약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여지가 없고, 전체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보험료 반영 대상이라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부산광역시 및 산하 자치단체에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줄 것을 건의한 것이다.

##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제도 개선 건의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면제 대상금액 상향 건의

부산시회는 12월 19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의 현행 문제점 개선을 위해 중앙회를 경유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부산시회는 현행 법령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는 건설기계대여금액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적시적기에 투입되어야 하는 경우, 일일대여, 단기대여, 건설기계대여업자가 보증서 발급을 요구하지 않는 등 건설공사 현장여건을 감안할 때 현실과 맞지 않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보증서 발급 면제대상금액을 당초 2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개선하여 줄 것과 일일대여, 단기대여 등 건설기계대여대금을 즉시 지급한 경우 보증서 발급이 면제될 수 있도록 건의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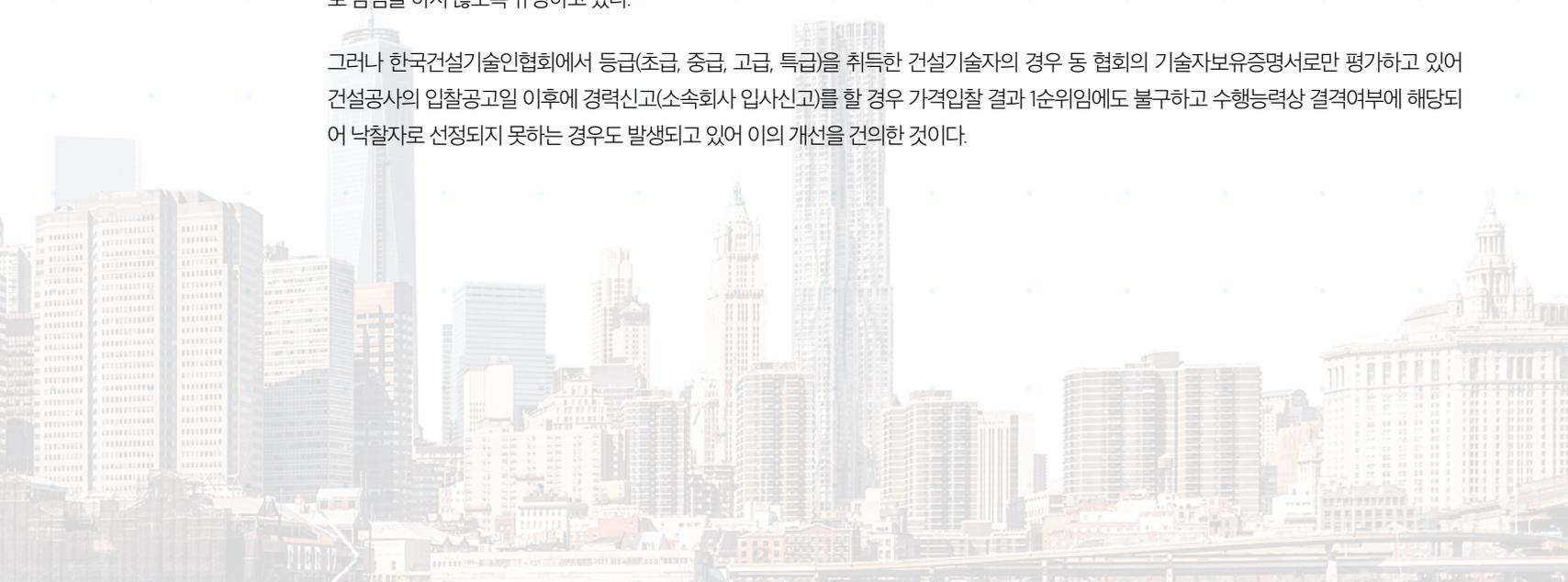
## ❖ 공공공사 적격심사 시 기술자 보유현황 증명 현실화 건의

부산시회는 12월 26일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평가 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등급을 취득한 건설기술자의 경우 실제 근무한 사실(4대 사회보험 가입증빙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후에 경력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건설업 등록기준에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시 감점하지 않도록 동 예규 개선을 건의했다.

행정안전부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기준에서는 가격입찰 후 지체 없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서류를 제출받아 제6절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고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는 95점, 100억원 이상인 공사는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적격심사 평가기준(별지2~별지6)에서는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평가를 위해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0점을 감점토록 하고 있으며, 사망·실종 또는 퇴직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50일 이내)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등록기준을 충족시켜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한 경우는 별도로 감점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등급(초급, 중급, 고급, 특급)을 취득한 건설기술자의 경우 동 협회의 기술자보유증명서로만 평가하고 있어 건설공사의 입찰공고일 이후에 경력신고(소속회사 입사신고)를 할 경우 가격입찰 결과 1순위임에도 불구하고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해당되어 낙찰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어 이의 개선을 건의한 것이다.



# 04

## 신기술 소개



### ❖ 2018년 하반기 신기술 현황

지정번호 (지정일자)	개발업체	신기술명	주요 내용
841 (2018.07.10.)	쌍용건설(주), (주)평화엔지니어링, (주)유신, (주)동일기술공사, 진형건설(주)	힌지형 링크와 이물질 차단 판으로 구성된 교량용 신축 이음 공법(JHR-EJ공법)	신축이음부에서 발생하는 충격소음을 개선하기 위해 강재 링크를 힌지 형태로 연결하여 신축 거동을 수용하고, 링크 하부에 강재 이 물질 차단판을 적용하여 교량 하부로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는 신 축용량 35~800mm 범위의 교량용 신축이음 공법
842 (2018.07.20.)	(주)건일, (주)다산컨설턴트, (주)천일, (주)쏘일텍코리아	지반앵커 상대변위 측정장 치 및 그 시공기술(STK 지반 앵커공법)	지반앵커 정착장과 정착두부간의 상대변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상 대변위 측정재를 설치하여 간단하게 지반앵커 보유응력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로서, 지반앵커 보유응력 손실에 대한 허용기준을 설정 하여 지반앵커 보유응력 손실량이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신호캡 이 이탈되도록 하여 육안에 의해 쉽게 판정할 수 있도록 한 기술
843 (2018.08.01.)	(주)포스코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주), (주)간삼건축종합 건축사사무소, (주)엑트파트너, (주)쓰리디엔지니어링	역U형 상부강판과 날개 달 린 U형 하부강판을 용접 조 립한 박스형 세미슬림플로어 합성보 공법(AU 합성보 공 법)	날개 달린 U형 하부강판 상부에 역U형 상부강판을 용접하여 제작 된 박스형 강재 보의 중간플랜지 위에 슬래브를 일체로 형성한 합 성보 공법으로, 벌어짐과 비틀림, 기동과 접합되는 단부에서 부모 멘트 저항성능 및 콘크리트 구속효과에 유리한 폐단면 구조이고, 역U형 상부강판이 슬래브에 매입되어 슬래브와 일체로 합성되며, 중간플랜지 위에 딥데크(deep deck)를 시공할 수 있어 층고절감 과 장스팬 슬래브 구현이 가능하고, 내화뿔철재 2시간(16mm)과 3 시간(21mm)의 내화성능을 확보한 합성보 공법
844 (2018.08.10.)	이성(주), (주)장민이엔씨	다중채널 차량 탑재형 지표 투과레이더(GPR) 장비를 이 용한 지반내부 공동 탐사기술	각기 다른 주파수 대역의 레이더를 병렬로 설치한 지면 접촉식 차 량탑재형 지반탐사 장비와 해석 소프트웨어를 탐사차량 하부에 부착하여 0.1~2.0m 범위의 지반을 조사하고 중첩해석기법으로 해 석함으로써 지반 내부의 공동을 탐사하는 기술

지정번호 (지정일자)	개발업체	신기술명	주요 내용
845 (2018.08.24.)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평화엔지니어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계룡건설산업(주), (주)본이앤씨	연약지반 철도 노반의 침하 억제를 위해 섬유보강 및 확 대된 말뚝캡을 이용한 지지말 뚝공법의 설계 및 시공기술	연약지반구간에 노반 건설 시 최소 허용잔류침하량(30mm 이하)을 만족하고 건설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타원형 아칭이론과 등분포형 토목섬유 하중전달이론을 이용한 설계법을 적용하여 상부 성토체 와 교통하중을 산정하고 토목섬유 앵커리지를 이용한 하중전이층 과 확대된 말뚝캡을 통해 말뚝을 직접 전달하여 원지반에 잔류침하 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침하억제형 섬유보강 지지말뚝공법의 설 계법과 이를 이용한 시공기술
846 (2018.08.24.)	(주)신승이앤씨, (주)동성엔지니어링	단일 원형강관 거더 상부에 강 재 브라켓과 목재 데크를 설치 한 단경간 자전거 보도교 시공 기술	다수의 거더 설치로 시공성이 낮은 기존 기술의 단점을 해결하고 단순한 구조로 재료비를 절감하여 경제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 량의 선형을 따라 단일의 원형강관을 이용한 주거더를 설치하며, 주거더의 축단에서 복수의 횡방향 강재 브라켓을 연결시킨 후 목 재 데크와 난간을 설치하는 단경간 자전거 보도교 시공 기술
847 (2018.09.18.)	(주)풍산에프앤에스, 한국과학기술원	가속도계와 실시간 글로벌 위성항법시스템(RTK- GNSS)을 이용한 초장대 교 량의 동적변위 실시간 정밀 계측 기술	구조물의 동적거동을 3축 가속도계와 실시간 글로벌위성항법시 스템(RTK-GNSS)을 통해 각각 측정된 후 2단계 칼만 필터(Kalman Filter)를 통해 해석함으로써 정밀도와 해상도가 향상되어 상시 실 시간으로 동적 변위의 측정이 가능하므로 정밀한 변위계측이 필요 한 구조물의 균열 및 붕괴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기술
848 (2018.10.10.)	가온조경건설(주), 아이앤지산업(주)	데크지지판을 이용하여 데 크용 판재를 수직으로 체결 하는 데크판재 시공 공법	데크 구조체의 내구성 및 시공 편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데크 시공 시 기초부인 장선에 데크 판재를 지결피스로 체결하지 않 고 체결용 돌기에 데크지지판을 연결하여 데크판재를 연속적으 로 압입(삽입) 체결하여 설치하는 데크판재 시공기법
849 (2018.10.10.)	(주)리트코, 대구도시철도공사	양방향 전기집진기술을 지 하철 본선환기구에 적용한 미세먼지 저감기술	양방향 전기집진장치를 지하철 본선터널 환기구에 설치하여 지하 철 환기방식에 상관없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제거하여 지하 철 역사, 본선터널, 열차객실의 공기질과 지하철 역사주변의 대기 질까지 향상시키는 시스템으로 다우유닛형 집진셀의 적용으로 현 장별 맞춤 설치가 쉽고 고품속(13m/s)과 고품량에 적합하며 자동 운전시스템과 자동세척장치를 적용하여 유지관리가 쉽고 유지비 용이 저렴하며 먼지, 수분,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하여 반영구적 으로 사용이 가능한 미세먼지 저감시스템

#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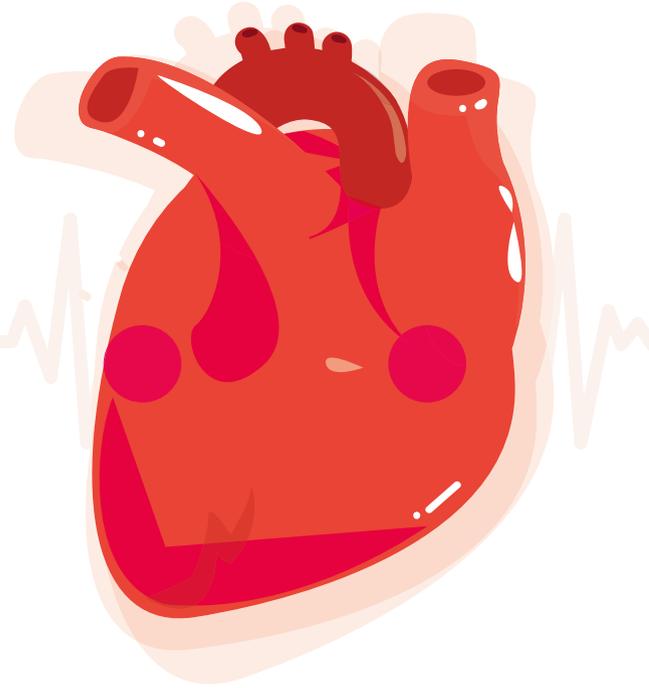
지정번호 (지정일자)	개발업체	신기술명	주요 내용
850 (2018.10.17.)	(주)상봉이엔씨, (주)콘텍이엔지	SB 폴리머혼화제를 첨가하여 개질시킨 콘크리트와 브라켓 가설재를 이용한 포장 일체식현장타설 교량 바닥판 시공기술	콘크리트의 내구성 향상, 균일한 피복두께 확보 및 공기 단축을 위하여 SB 폴리머를 첨가하여 개질시킨 콘크리트와 U볼트를 전단연결재에 용접 연결하고 1개의 수직재와 2개의 경사재 위에 수평재가 위치한 오버행 브라켓 가설재를 이용하여 별도의 교면포장 공정이 필요없는 교량 바닥판과 교면 포장을 일체로 시공하는 현장타설 교량 바닥판 시공기술
851 (2018.11.08.)	(주)이왕코리아, (주)다누리건설, 이케이리플래시건설(주)	유리 섬유로 보강한 함침튜브와 광경화 방식을 적용한 하수도 관로 비굴착 보수보강공법	다층 구조로 이루어진 튜브를 활용하여 관로를 보수 또는 보강할 수 있는 비굴착 관로 갱생 공법으로 내진성능을 확보하였고 원형 관로에 작용이 가능하다. 시공 두께를 줄여 통수량을 증대시킬 수 있고 경화장치에 센서 및 카메라를 장착하여 튜브의 팽창상태, 내부 온도 및 경화속도 등을 제어하여 시공 전 과정을 실시간 점검할 수 있으며 함침된 튜브는 상온에서 6개월 보관 가능하다.
852 (2018.11.22.)	(주)한맥기술, (주)삼안, (주)장현산업, (주)피티씨, 한라산업개발(주)	동근형 확대머리를 갖는 이형강봉과 연결 정착장치를 이용한 프리텐션 반단면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공법	현장작업을 최소화 하고 교량 상부에서 작업 시 안전사고를 예방함과 동시에 바닥판에 균열을 억제하고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동근형 확대머리를 갖는 이형강봉과 연결 정착장치로 반단면 프리캐스트 바닥판에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고 정착장치에 연결되는 부속장치를 현장타설 콘크리트 부분까지 연결하는 프리텐션 방식 반단면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공법
853 (2018.11.30.)	신세계건설(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까뮤이엔씨, 우림콘크리트공업(주)	스터드 전단연결재를 설치한 각형강관 매입형 중공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합성기둥 공법	각형강관의 외부에 스퍼드 전단연결재를 설치하여 철근콘크리트가 일체로 합성되도록 공장 제작하고, 현장에서 각형강관의 중공부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완성하는 강관 매입형 중공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합성기둥 공법
854 (2018.12.07.)	(주)대영엔지니어링, (주)세광종합기술단, (주)드림인테크	전층이 유공으로 연결된 DT 소파블록과 이의 시공방법	전층이 유공으로 연결되어 계단식으로 시공되었을 때, 3m 미만의 파도가 계단의 정면과 좌우측상부 및 후면으로 유도되면서 감쇄하는 구조로 공극률은 48퍼센트이고 블록 하부에는 양압력 해소 구멍을 설치한 연안의 재해를 저감하는 소파블록과 이의 시공방법

※ 출처: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www.kcnet.or.kr) ⇒ 신기술현황 ⇒ 지정현황(건설신기술)

과로다임을 사수하라!

## 급성심근경색 증상과 예방

글 송정은



겨울철 유난히 발병률이 높은 대표적인 질환은 ‘급성심근경색’이다. 기온이 내려가면 우리 몸의 혈관은 급격히 수축되고 혈액의 점성이 증가해 혈전이 혈관을 막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2017년 유럽심장학회지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낮 최고 기온이 낮은 11월부터 2월까지 겨울철에 급성심근경색증의 발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 겨울철 발생위험이 높은 급성심근경색

급성심근경색증은 심장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혈전으로 막히면서 심장근육이 괴사하는 질환이다. 우리나라는 급성심근경색환자가 2014년 78.7명에서, 2017년 97.7명으로 늘어나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사망원인 1위인 암의 뒤를 잇는 병인만큼 치명적인 병이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급성심근경색증은 급사, 돌연사를 유발할 수 있고 치료가 늦어진다면 심각한 심부전으로 진행돼 좋지 않은 예후를 보일 수 있는 위험한 질환이다.

특히 기온이 낮아지는 겨울철에는 혈관의 수축 폭이 커지는데 이때 혈압이 상승하면서 심장이 큰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또한, 혈압이 높아지면 혈관 자체가 불안정해지는데 여기에 불필요한 지방성분까지 많이 쌓이면 혈전이 만들어져 혈관이 좁아지거나 아예 막힐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심장은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점차 괴사하게 된다.

### ⊕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을 주의해야 한다

급성심근경색의 가장 주요한 증상은 흉통과 호흡곤란이다. 흉통은 주로 운동 및 감정적 스트레스를 받는 것과 관계가 있는데 오르막길이나 계단을 오를 때 또는 갑자기 심한 육체적 활동을 시작할 때 유발된다. 통증은 가슴 중앙에서 시작되고 찌르는 날카로운 통증보다는 조이는 둔탁한 통증이 특징이다. 이런 흉통 및 호흡곤란이 휴식을 취하면서 호전되면 안정형 협심증이지만, 휴식 중에도 통증이 생기거나 30분 이상 통증이 지속되고 강도가 세진다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발병할 수 있는 상태로 빨리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특히 식은땀을 흘리거나 안색이 창백해진다면 심기능 저하에 따른 순환부전 상태이므로 응급치료를 받아야 한다. 관상동맥이 폐쇄돼 흉통이 시작되면 약 2시간 이후부터 심장근육의 괴사가 시작되고 시간이 지체될수록 심장근육은 회복 불가능 상태로 빠져들게 된다.

### ⊕ 어떤 사람이 더 주의해야 할까?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운동 부족, 가족력 등이 있지만, 특히 흡연은 정말 위험하다. 하루에 한 갑씩 담배를 피울 경우 남자는 3배, 여자는 6배까지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할 확률이 높아진다. 비만과 운동 부족도 마찬가지로 급성심근경색의 발병률을 높인다. 이전의 연구들에서 이미 비만이 급성심근경색과 같은 관상동맥질환의 발생을 10~20%, 많게는 50%까지 증가시킨다고 밝혀졌다.

또한, 나이도 중요한 위험인자로 40대 이후부터 가파른 발병률 상승을 보인다. 특히 가족력이 중요해 가까운 가족 중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의 병력이 있는 경우, 젊은 나이부터 위험인자를 교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급성심근경색에 대비하기 위해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외출 시에는 내복을 착용하고, 체온의 80%는 머리를 통해 나가기 때문에 귀마개, 모자, 마스크 등을 착용해야 한다.



(주)삼성도장

대표

이관옥

## 냉정과 열정을 넘나들며 사회에 이바지하는 건설인

“도장은 조화된 색채의 선택입니다”

와인색 투피스 차림으로 나타난 흔치 않은 여성 건설인. 일흔을 바라보는 나이로 믿기지 않을 만큼 정열적이다. 이관옥(64) (주)삼성도장 대표. 한마디로 ‘역순이’ 사업가다. 차분하게 말하려고 노력하지만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정을 숨기기에는 역부족인 듯하다.

1997년 도장 면허를 낸 후 삼성도장을 설립했으니 벌써 22년째에 접어들었다. 삼성도장하면 이 대표의 가족사로 시작하지 않을 수 없다. 그의 남편은 회사의 총괄이사인 백정식(72) 씨로, 부산대 화학과 출신의 엘리트 엔지니어 출신이다. 백 이사는 과거 부산을 대표했던 동명목재 계열 동명산업 페인트사업부에서 기술책임자로 근무했다. 하지만 혈기왕성했던 40대 초반, “지금 하는 일의 10%만 해도 먹고 산다”며 사표를 던져버리는 일대 사건을 저질렀다. 당시 어린 삼 남매를 키워야 했던 어려운 상황에서 부부는 북구 화명동 롯데캐슬 자리에 컨테이너 하나를 갖다 놓고 페인트 대리점을 시작했다. 그렇게 어렵사리 시작한 사업이 승승장구하면서 당시 세 들어 살던 3층 집을 구입했고, 현재 회사 사무실로 개조해 사용하고 있다. “가정집을 회사로 쓰는 경우가 흔치 않죠. 하지만 삼 남매를 남부럽지 않게 잘 길러낸 명당자리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여기서 일할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왜 이사로 내려왔고, 아내가 대표 자리를 맡게 됐을까. 백 이사의 말을 들어보자. “삼성도장을 세워서 제가 대표를 맡고, 아내는 이사를 맡았죠. 근데 기술만 갖고는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더군요. 사교성도 없고 말주변도 없으니 실적이 오르질 않습니다. 그래서 1년 반 만에 아내에게 넘겼죠.”

이 대표가 옆에서 거든다. “백방으로 뛰어봤지만 대표가 아니라며 알아주지를 않더라고요. 고민 끝에 찾아간 철학원에서도 ‘당신이 아니면 회사가 절대 안 된다’고 해서 남편을 설득했고, 명의 이전을 했습니다. 남편이 뒤에서 도장 기술 부문을 든든하게 지켜주니 영업이 더 잘 됩니다. 작년 매출이 80억 원을 훌쩍 넘겼으니 이만하면 알짜 회사 아닙니까.” 남편에 이어 막내 아들(38)이 부장을 맡으면서 기업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단다. 가족 기업의 장점을 십분 활용하는 이 대표의 수완이 놀랍다.

그녀는 회사를 설립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처음으로 대형 입찰을 따낸 일을 잊지 못한다. “만덕 대성아파트(850세대) 재도장 입찰 때 20여 개 업체가 물려들었는데 기적적으로 낙찰 받았습니다. 밤까지 진행됐던 기나긴 입찰을 마치고 난 뒤 밖에 나와 별을 보며 하염없이 감사의 절을 했던 기억이 선합니다.” 최근에는 신축 동래 부전교회 도장공사도 따내는 등 작은 덩치지만 매서운 삼성도장으로 키웠다. 부산에서 이름난 경동건설의 도장 하청을 대부분 맡을 정도이니 그 실력과 신뢰도를 알 만하다.

이 대표는 도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다. 비록 건축 공정의 1%에도 못 미치지만 여성으로 치면 얼굴 화장과 같다는 것이다. 화장을 잘하면 빛이 나듯이 집과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색칠 여부에 따라 새 집처럼 확 변할 수 있다는 게 이 대표의 지론이다. 그에 따르면 도장은 한마디로 ‘조화된 색채의 선택’이다. 실로 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그는 사업가로서 ‘5불(不)’을 자랑한다. 첫째, 어음을 쓴 적이 없다. 둘째, 그 혼한 부도를 단 한 차례도 맞지 않았다. 셋째, 하자 발생이 단 한 건도 없었다. 넷째, 직원 임금 체불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다섯째, 페인트회사로부터 담보 제시 요구가 없었다. 현금 거래가 원칙이기 때문이다. 참으로 대단한 내공이 아닌가.

그에게 사업 성공의 원동력을 묻자, 딱 부러지게 말한다. “냉철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주위의 흐름에 흔들려서는 안 돼요. 저는 영업을 위해 골프를 하거나, 술자리를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믿음을 주는 일에만 집중하죠. 여성이지만 의리를 중시합니다.”



‘역순이’ 사업가의 배경에는 적극적인 사회참여 성향이 자리잡고 있다. 젊었을 때부터 동네 반장을 도맡았고, 여성경제인연합회 대표위원직만 올해로 10년째다. 그뿐인가. 연세구청 체육회 이사에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대표회원도 20년 가까이 지내다 지금은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씩씩이도 통이 크다. 울산향우회 여성회장이 되자 자신의 월급에 200만원을 보태 무려 1,000만원을 기금으로 내놓기도 했다.

이토록 적극적이며 헌신적으로 사회생활에 힘쓰는 이유가 뭘까. 그의 인생철학인 ‘사회에 한 톨의 밑알이 되자’에 해답이 있다. 이 대표는 최근 ‘다빈 연예예술단 부의장’이 되면서 가수 자격증을 땀다. 가수가 되는 게 꿈이어서? 천만에. ‘노래로 주위 이웃들에게 즐거움을 선물하기 위해서’가 정답이다. 그는 선친의 가르침을 매일 가슴에 아로새긴다. “아버님께서 길을 가시다 큰 돌멩이가 놓여있자 손수 치우셨어요. 그 이유를 여쭙더니 ‘남들이 걸려 넘어지면 다칠까 봐’라고 하시더군요. 그때 깨달았죠. 남을 배려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논어’에 이런 말이 있지 않다. ‘교언영색 선의인(巧言令色 鮮矣仁)’. 환심을 사려고 교묘히 꾸미는 말과 아첨하는 기색에는 어진 이가 드물다는 뜻이다. 그렇다. 이 대표는 꾸미지 않는 ‘어진’ 건삶인임에 틀림없다.

글 최원열

# 05

건설인 제36호

+ 전문건설인의 삶을 누려오면서 경험했던 실패와 좌절을 극복하고 성장한 사람들의 이야기



해진건설(주)

대표이사

이상호

## 무한한 바다를 탐험하며 꿈과 행복을 실현하는 건설인

“블루오션은 스스로 개척하는 것입니다.”

‘어린왕자’의 저자 생텍쥐페리가 말했다. “배를 만들고 싶다면 나무를 잘라 손질하고, 공구를 준비하고, 일을 분배하여 주된 일꾼들을 재촉하지는 마라. 대신 그들에게 무한한 바다에 대한 그리움을 가르쳐 주라”. 그 가르침을 삶에서 실천하고 있는 건설인이 있다.

이상호(58) 해진건설(주) 대표. 지금까지 바닷가를 떠나본 적이 없는 해운대 토박이다. 고교 시절 바다로 풍덩 뛰어들어 신기한 세계를 탐색했던 취미인 다이빙을 평생 밥벌이로 만든 ‘의지의 한국인’이 바로 그다.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다’는 저 유명한 공자의 표현이 딱 맞아 떨어진다. 즐기는 일로 돈을 버는 그는 그래서 무척이나 행복하다.

그는 바다 밑바닥에 ‘인터넷 바닷길’, 즉 해저케이블을 까는 사업을 한다. 인터넷 데이터 통신의 99%가 바다에 부설된 해저케이블을 통해 이뤄진다는 사실을 아는지. 현재 전 세계에 설치된 해저케이블은 총 연장만 지구를 30바퀴 이상 돌 수 있을 정도로 이른다. 왜 그럴까. 해저케이블이 글로벌 디지털 패권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20년 이상 수중잠수사로 활약한 그는 현장실무에 관한 한 정상급 스킬(기술)과 안목을 갖췄다고 자부한다. KBS를 비롯한 지상과 방송의 수중촬영분 중 상당수를 맡기도 했다. 특히 선진국 일본에 대한 부러움이 그를 '전문가 중의 전문가'로 우뚝 서게 했다. 일본이 해저케이블 설치공사를 독식하는 게 분해 밤잠을 설치면서 결눈질로 배웠던 그다. "당시 보조역할을 맡았는데, 일본기술자들이 어찌나 보안에 철저하던지 텐트를 쳐놓고 작업하더군요. 그들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캐묻고, 몰래 촬영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쏟았죠. 1999년 KT서브마린이 설립된 후 우리나라 해저케이블 기술력이 본 궤도에 올랐고, 이제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그에게는 잊히지 않는 명 장면들과 추억들이 많다. 2002년 한일월드컵 때 전 세계에 위성중계가 가능했던 건 부산의 송정에서 일본, 러시아, 미국, 유럽 등지와 연결하는 해저광케이블 공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당시 대한뉴스에 일본인들과 함께 작업하는 제 모습이 소개되기도 했어요. 참으로 가슴 뿌듯하더군요." 1990년대 중반 섬진강 다리 공사 때는 수심 44m까지 내려가 국내 최초의 풀링공법(유압으로 다리를 밀어내는 공법)으로 완공의 기쁨을 누렸다.

가장 보람찼던 순간은 울릉도 광케이블 설치 공사를 마쳤을 때였다. 이 공사로 섬 생활이 확 달라졌으니까. 1993년 당시 밤 시간대 울릉도 전화는 폭주했고 TV도 1개 채널밖에 안 나왔을 때였다. 하지만 공사로 인해 그런 불편이 모두 해소됐다. 주민들은 어느 시간대든 편리하게 전화나 휴대폰 통화를 하고, 다양한 TV 채널을 시청할 수 있게 됐다. "밤을 새워 수중작업을 하고 육상에 올라오니 주민들이 환호하면서 쌍수를 들고 달려오더라고요. 한마디로 감동 먹었습니다."

수중잠수라는 게 것처럼 힘들다. 극한직업이 따로 없다. 잠수사들은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갖춘다고 해도 결코 바다에 오래 있지 못하다. 인체를 짓누르는 수압에 견디기 힘들어서다. 일반적으로 수중에선 깊이 1m마다 수압이 cm<sup>3</sup>당 100g이 늘어난다. 그렇기에 직업 잠수사 대부분이 잠수병에 시달린다고 한다. 더구나 자칫 방심하다간 산소 공급호스가 끊기는 치명적인 사고에 노출돼 있으니 안전이 최우선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잠수부 12명을 거느린 해진건설에서 지금껏 케이블공사 중 사고가 단 한 건도 없다는 건 이 대표가 그만큼 철저한 안전의식을 지녔다는 뜻이다. "체력 관리와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심리적 안정감은 두말할 것도 없구요. 잠수사들에게 절대 무리하게 일을 시켜선 안 됩니다."



해진건설에서 한 달에 작업 가능한 날은 평균 20일 정도에 불과하다. 풍랑 등으로 기상조건이 나빠지면 그 중에서도 절반밖에 일하지 못한다. 그런 가운데서도 지난해 도급액이 75억원에 달할 정도이니 참으로 대단한 실적이 아닐 수 없다.

"부산의 수중공사업체만 48개에 달합니다. 수중공사업으로 입찰되는 공사는 몇 건 되지 않으며, 대부분 하도급으로 시행되다 보니 '제 살 깎아먹기식' 저가입찰이 난무할 수밖에요. 지역업체 우대정책이 절실합니다." 이 대표는 그래서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등 비책을 마련해두고 있다.

200만원을 빚내 결혼했을 정도로 '가방끈'과 연고 하나 없이 맨손으로 기업을 일궈낸 그에게 두려움은 없다. 그에게 희망은 광활하게 펼쳐진 바다와 동의어다. '바르게 살자'를 삶의 화두로 붙들고 살아온 이 대표. 학벌이나 스펙이 아니라 자신만의 꿈에 대한 무한한 그리움을 갖는 것, 자신이 가장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정직한 꿈을 꾸는 것,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다. '해진(海進)'은 오로지 믿음과 첨단 기술력으로 드넓은 바다에 진출해 캐어낼 무한한 보고에 다름 아니다.

글 최원열

Story 01

## 한국인 관광객

미국을 여행하던 한국인 관광객이  
큰 교통사고를 당했다.  
급히 출동한 미국 경찰이  
쓰러져 있는 한국인 관광객에게 물었다.  
“How are you?”  
한국인이 피를 철철 흘리며 힘겹게 대답했다.  
“I'm Fine, Thank you. And you?”



Story 02

## 결혼 이혼 재혼의 법칙!

결혼은 '판단력' 부족으로 이뤄지며,  
이혼은 '인내력' 부족으로 이뤄지고,  
재혼은 '기억력' 부족으로 이뤄진다.



“

이끌든지,  
따르든지,  
비키든지.

- 테드 터너, CNN 설립자

”

# MANAGE- MENT

이달의 경영어록

“

기업가 정신이란  
스스로 기회를  
창출해 내는 것이다.

- 비즈 스톤, 트위터 공동창업자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

고용노동부에서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정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72호, 2018. 10. 05

####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변경 계상 구체화(제4조 제3항)

- 설계변경으로 대상액 변동이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계상 시 낙찰률이 배제될 수 있도록 조정 계상 기준 마련

####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낙찰률 적용 배제(제5조 제1항, 제4항)

- 발주자는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낙찰률 적용하지 않고 금액 조정 없이 반영
- 발주자는 계상한 안전관리비를 입찰공고 등을 통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알려야 함.

#### 2. 시행일자: 2018. 10. 05.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조달청 「상·하수도공사 입찰참가자격 검토 항목」 제정

최근 조달청에서는 상·하수도공사 발주와 관련하여 전문·종합건설업체 간의 업역 분쟁을 예방하고, 공사 발주의 합리적 집행을 도모하고자 「상·하수도공사 입찰참가자격 검토 항목」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주요 내용

- 주된 공사(상·하수도공사)에 종속되는 부대공사만 포함된 경우  
⇒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발주
- 주된 공사(상·하수도공사)를 위한 부대공사 이외의 별도 공종이 있을 경우  
⇒ 종합건설업으로 발주

※ 이외의 업역 구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 참조에서 확인 가능하다.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0월 16일자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238호, 2018. 10. 16.

#### 1. 주요 내용

- 하도급대금 부당결정·감액 등의 불공정행위로 고발 1회 또는 과징금 2회 조치 시 입찰참가 제한(별표3)  
⇒ 윈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 기술자료 서류 보존기한 연장(3년→7년) 및 서면기재 의무화(제6조 및 제7조의3)
- 서면실태조사 방해 행위 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4)
- 정액과징금 기본금액 상한(5억원→10억원)(별표2)

#### 2. 시행일자: 2018. 10. 18.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최근개정법령 또는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고시 개정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정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0호, 2018. 10. 23.

#### 1. 주요 내용

##### 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에 자재·장비대금 추가 우대(제2조, 제9조, 제10조의2, 별표1 및 별표2)

- 민간공사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활용실적 인정범위를 노무비 외, 자재·장비대여금 지급실적까지 확대하기 위해 용어정의 수정 및 가점 우대 대상 추가

##### 나. 상호협력 평가주체 확대(제12조)

- 상호협력 평가의 객관성 강화를 위해 협력의 대상인 하도급업체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평가주체를 보완  
(기준) 대한건설협회 → (개정) 대한건설협회 + 대한전문건설협회

##### 다. 대기업·중소기업의 협력평가기준 개정(별표1 및 별표2)

- 하도급 낙찰률 배점 신설(5점)
  - 하도급 낙찰률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하고, 하도급률 가중평균 비율이 높을수록 높은 배점을 부여
- 전자하도급 계약 배점 확대(2점→4점)
  - 계약서 위·변조 방지, 물류·시간 비용 절감 및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을 위하여 전자하도급 계약 배점을 2점→4점으로 확대
- 건설업체 및 부실시공업체에게 신인도 항목 감점 신설
  - 건설업체의 사회적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당내부거래, 갑질 등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건설업체 및 부실시공업체에게 신인도 항목 감점 부여
- 상호협력 표창 배점 확대
  - 대·중소, 원-하도급 기업 간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제고 및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상호협력 표창의 배점을 2점→3점으로 확대
- 해외건설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을 가점으로 전환
- 평가항목별 배점 및 평가기준 조정
  - 하도급낙찰률 배점 신설, 전자하도급 배점 상향과 정부 건설산업정책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일부 항목 간 배점 조정
- 국토교통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건설업 윤리 및 실무관련 교육 시 교육지원 실적 인정 등

#### 2. 시행일자: 2018. 07. 03. 이후 계약분부터 적용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예규·지침·고시·통첩에서 확인 가능하다.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고시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2018. 10. 31.

#### 1. 주요 내용

-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방법 추가(제22조)

종 전	개정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및 공동주택단지 홈페이지

- 전자입찰 시 입찰관련 서류 제출 방법 변경(제24조 제2항)

종 전	개정
우편 및 방문 등 비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 가능	시스템 등록을 통한 제출만 가능

- 참가자격 제한 범위 확대(제26조)

종 전	개정
경쟁입찰	경쟁입찰, 수의계약

※ 종전 규정에서는 경쟁입찰에서만 참가자격제한자\*를 입찰참가 제한하였지만 개정을 통해 경쟁입찰, 수의계약 모두 참가자격제한자\*를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함.

\* 참가자격제한자: 면허 및 자격 미등록자,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영업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국세 및 지방세 미납납자 등

#### 2. 시행일자: 2018. 10. 31.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건설산업제도 ⇒ 예규·지침·고시·통첩 또는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 공포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354호, 2018. 12. 11.

#### 1. 주요 내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건설기계 1인 사업주(총 27종)를 포함하여 산재보험 특례 적용(제125조 제2호)

종 전	개정
건설기계 1인 사업주의 경우, 전체 27개 건설기계 중 '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 1개 직종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 특례 적용	건설기계 27종 모두 특례 적용

※ 건설현장 건설기계 1인 사업주 사고 발생 시, 사후조치(산재보험 적용 가능)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산재보험료 신고·납부시스템의 변화나 건설사 보험료 부담 등의 영향은 없음

#### 2. 시행일자: 2019. 01. 01.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지방계약 예규 개정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 주요 내용 【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 2018. 11. 08.】

- 가. 낙찰률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후정산 대상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추가(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비용분담 내용 신설(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1])
- 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격심사 기준 완화(제8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 시공평가 심사 항목 삭제 등
- 라. 불가항력 사유에 '폭염' 추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 주요 내용 【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 2018. 11. 08.】

- 가. 적격심사 대상자의 심사서류 미제출에 대하여 계약담당자의 보완·추가제출 통보 의무화(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나. 경영상태 신용평가기관 추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3>)
  - 서울신용평가(주) 추가

### 3. 시행일자: 2018. 12. 01.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예규·지침·고시·통첩에서 확인 가능하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대통령령 제29318호, 2018. 12. 04.】

- 가. 지체상금 상한제 도입(제74조 제3항)
  - (중전) 상한액 미규정 → (개정) 계약금액의 30/100까지 산정
  - ※ 기성부분을 인수한 경우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
- 나. 공사계약 이의신청 대상 확대(제110조 제1항 제1호)
  - (중전) 70억 이상 → (개정) 30억 이상

### 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령 제699호, 2018. 12. 04.】

- 가. 지역제한 경쟁 입찰 전문공사 대상 확대(제24조 제2항 제1호 나목)
  - (중전) 7억 미만 → (개정) 10억 미만

### 3. 시행일자: 2018. 12. 04.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최근개정법령에서 확인 가능하다.

## 내 전문건설업계 공사비 지원방안 발표

협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간담회 개최 및 실무 T/F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전문건설업계 애로사항 해소를 건의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공공기관 최초로 공기연장 시 하수급인의 간접비 지급 기준 및 공사 발주 시 하수급인 현장사무실 설치·운영비를 직접공사비에 반영하는 등 전문건설업계가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전문건설업계 맞춤형 공사비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주요 내용

#### ○ 공기연장 시 하수급인의 간접비 계상근거 및 지급기준 마련

- 인건비 인정: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 직접경비 인정: 가설비, 유류장비비 등
- 증빙가능 경비 인정: 각종 보증보험 연장 수수료 등

#### ○ 하수급인의 현장사무실 지원 기준 마련

- 이동식 컨테이너 사무실 설치·해체 및 운영비용 공사원가 반영
- 토목공사 현장 우선 적용

### 2. 적용시기: 2019. 01월 중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이 다음과 같이 공포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법률

법률  
제15991호, 2018. 12. 18.

### 1. 주요 내용

#### 가.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제29조의3)

※ 외국인고용법,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법 적용은 3년 유예(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

○ 제한기간: 2년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

#### ○ 제한대상

- 하도급 제한 위반으로 처분(영업정지, 과징금) 받은 자(건설법)
- 공제부금 미납으로 2년 이내 3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건설근로자법)
- 임금체불 사업주명단이 공개된 자(근로기준법)
- 산재발생 건수 등이 공표된 자(산업안전보건법)
- 고용허가 위반(1회), 특례고용가능 확인 위반 과태료 처분(2회)(외국인고용법)
- 불법 체류자고용, 근무처 변경·추가 미허가 외국인 고용으로 처벌(출입국관리법)

○ 행정기관의 장은 처분 사실을 국토부장관에게 통보

○ 국토부장관은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게재하고, 하도급 참여 제한 게시 7일 전까지 해당 건설업자에게 통보

- 하도급 참여제한 중에 있는 자에게 하도급 및 수주 금지
- 하도급 참여 제척기간 도입
  - 정보가 제공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하도급 참여제한 불가

#### 나. 공공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의무화(제34조 제9항)

- 건설업자는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수령
  - 소규모공사 등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

#### 다. 불법하도급 처벌 강화(삼진 아웃제)(제83조 제7항)

- 일괄하도급, 동일업종 하도급, 재하도급 위반으로 처분을 받고, 5년 이내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등록 말소

#### 라. 대금 지연지급 시 이자지급 신설(제34조 제8항)

-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을 지연 지급 시 공정위 고시 이자지급(연 15.5%)

#### 마. 공사 현장별 기계보증제 도입(제68조의3)

- 1개 공사 현장별 기계보증서를 착공일 전일까지 발주자에게 제출
  -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별보증 가능
- 발주자, 건설업자, 기계대여업자 3자 간 기계대금 직불합의 시 보증면제
- 공공기관 발주자는 보증서 제출 또는 교부 여부 확인 의무화

#### 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제 도입(제68조의4)

- 발주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여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
- 건설업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체결 시 발주자에게 통보

#### 사. 수급인 노무관리 벌점제 신설(제25조 제5항)

- 벌점부와 대상
  - 불법 하도급 관리소홀로 영업정지·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 임금지급 연대책임 위반으로 처벌받은 자
  - 산재예방 조치 미흡으로 산재발생 건수 등이 하수급인과 함께 공표된 자
  - 하수급인이 산재은폐하도록 교사·공모하여 처벌 받은 자
- 법령별 처분·처벌 담당 행정기관의 장은 국토부장관에게 통보

#### 아.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 신설(제48조의2)

-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고용실태, 복지증진 노력 등을 평가하여 우수업체 시공능력평가 우대
  - 시행일: 2019. 12. 19.(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 2. 시행일자: 2019. 06. 19.(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최근개정법령 또는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공포

국토교통부에서는 12월 24일 자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주요 내용**

대통령령  
제29415호, 2018. 12. 24.

### 1. 업종명칭 변경

종 전	개 정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 2. 시행일자: 2018. 12. 24.부터

## 노동관련 각종 요율표 - 2019년도

### ○ 건강보험료율

년도	보험료율
2017	보수월액 X 6.12%
2018	보수월액 X 6.24%
2019	보수월액 X 6.46%

- 직장보험료 부과등급제 폐지(2007. 01. 01.)로 보험료 산정 보수기준이 종전 "표준보수월액"에서 ⇒ "보수월액"으로 변경됨.
- 2019년도 가입자부담 3.23(50)%, 사용자 부담 3.23(50)%씩 각각 부담
-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8.51%(사용자 8.51%,근로자 8.51%씩 각각 부담)

### ○ 산재보험료율(천분율)

사업종류	년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일반건설공사(갑)					
일반건설공사(을)	38	38	39	4.05	3.75
중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의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여 사업종류별 보험요율을 고시함.

### ○ 국민연금료율

년도	보험료율
2017	표준소득월액의 9%
2018	표준소득월액의 9%
2019	표준소득월액의 9%

- 2019년도 가입자부담 4.5(50)%, 사용자부담 4.5(50)%씩 각각 부담

### ○ 고용보험료율 산정기준

사업별	보험료율	산정기준
실업급여 (공동 부담)	13/1,000(1.3%)	사용자 부담 6.5/1,000(0.65%) 근로자 부담 6.5/1,000(0.65%)
고용안정사업 · 직업능력	2.5/1,000(0.25%)	상시근로자 150인 미만
	4.5/1,000(0.45%)	상시근로자 150인 이상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개발사업 (사용자 부담)	6.5/1,000(0.65%)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업체
	8.5/1,000(0.85%)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 실업급여요율, 고용안정, 직업능력 전년대 동일

○ 노무비율(백분율)

사업종류	년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일반건설공사(갑)					
일반건설공사(을)		27	27	27	27	27
중건설공사		(31)	(31)	(30)	(30)	(30)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 ()안은 하도급 노무비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 공사의 개선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노무비율을 고시함.

○ 최저임금 및 기준임금

년도	최저임금			건설업 기준임금	
	시간급	일급	월급	시간급	월급
2016	6,030	48,240	1,260,270	16,310	3,408,840
2017	6,470	51,760	1,352,230	17,170	3,588,357
2018	7,530	60,240	1,573,770	17,320	3,619,987
2019	8,350	66,800	1,745,150	18,693	3,906,885

□ 최저임금은 2019. 01. 01. ~ 2019. 12. 31까지 적용

□ 월급은 월 209시간 기준(2011. 07. 01부터 5인 이상 의무적용)

■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건설업 상시 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건설업 월평균보수를 고시함.

○ 임금채권보장기금, 석면피해분담금사업주부담금 비율

년도	임채부담금비율(%)	석면부담금비율(%)
2015	0.8/1,000	0.04/1,000
2016	0.6/1,000	0.04/1,000
2017	0.6/1,000	0.03/1,000
2018	0.6/1,000	0.03/1,000
2019	0.6/1,000	0.03/1,000

■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을 고시함(2011년부터 보수총액기준)

■ 석면피해구제분담금(2011년 신설), 2010. 12월부터 경감비율 감소(25%)

○ 건설업 월평균임금

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
2015	3,157,765원
2016	3,408,840원
2017	3,588,357원
2018	3,619,987원
2019	3,906,885원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해 고시함.

○ 장애인 고용의무대상 사업주 범위 및 고용부담기초액

년도	사업주 범위(이상)	고용부담기초액 (1인당/월)
2015	69억 0천 9백만원	710천원
2016	75억 7천 5백만원	757천원
2017	75억 7천 5백만원	812천원
2018	75억 7천 5백만원	945천원
2019	86억 8천 1백만원	1,048천원

□ 총공사실적 기준, 2019년 의무고용률 3.1%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장애인고용 의무적용대상 공사실적액을 고시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을 고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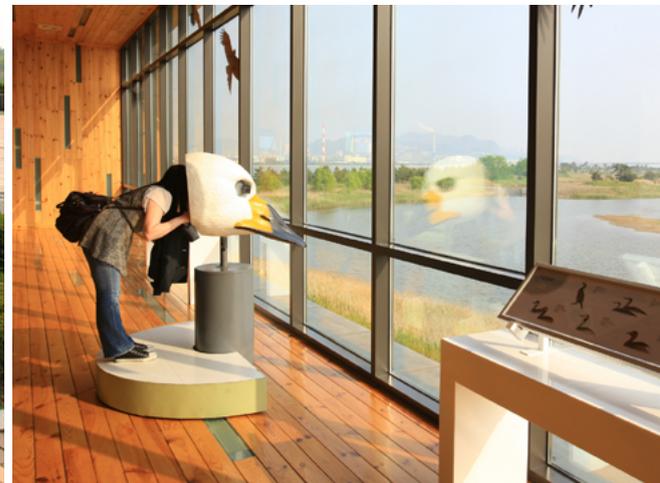
생생한 생태체험을  
즐길 수 있는 철새들의 낙원

## 낙동강하구 에코센터



글 송정은  
사진제공 한국관광공사(박성근)

강원도에서 시작되는 낙동강은 부산 강서구에서 바다를 만난다. '낙동강 하구'라고 불리는 이곳은 대양을 오가는 철새들의 관문으로, 매년 170여 종의 철새가 방문한다. 이뿐만 아니라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해 철새들이 살기도 좋은 곳이다. 겨울나기에 좋고, 여름에는 번식에 적합하며 먹이, 지리 및 기후 등 모든 조건을 갖춘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로 꼽힌다.



## 통유리 전망대에서 즐기는 낙동강

낙동강하구에코센터는 낙동강 하구 습지의 생태를 조사·관리·교육하는 기관으로, 강물이 바다와 어우러지는 지점에 있다.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천연기념물 179호)의 핵심 지역이자 낙동강 하구 생태관광의 중심축으로, 겨울 철새와 하구 습지의 생태를 관찰하기 가장 좋은 장소다. 에코센터에서는 자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야생동물치료센터와 탐방체험장, 아미산전망대도 관리한다. 낙동강 하구의 인문·생태 정보를 알기 쉽게 전시하고, 연중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에코센터 2층 전시관에서는 낙동강 하구의 생물과 습지, 을숙도를 찾는 철새의 풍부한 시청각 자료가 있어 자녀들과 함께 방문하면 학습과 여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에코센터의 진정한 매력 포인트는 2층 전시관 한 면을 시원하게 장식한 통유리 전망대다. 전망대 앞으로 철새 서식지와 물역새, 갈대밭이 펼쳐진다. 무료로 제공되는 망원경으로 철새가 무리를 지어 이동하고 먹이를 찾는 모습도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다.



## 다양한 생태 프로그램

직접 철새를 만나보는 생생한 체험을 원한다면 생태 현장 방문 프로그램을 추천한다. 시기마다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는데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의 철새를 볼 수 있는 기간이다. 4월부터 여름철까지는 식물과 곤충, 8월에는 갯벌에서 조개류 등 저서생물을 직접 캐볼 수 있다. 인터넷으로 예약을 받아 교육실에서 생태 교육을 하고, 3시간 정도 야외에 직접 체험하러 나가는 방식이다.

생태체험 교육은 주말마다 열린다. 겨울엔 초등학교 고학년을 위한 '새 박사'와 함께하는 탐조 체험과 초등학교 저학년, 유아를 대상으로 한 '알기 쉬운 겨울 철새 이야기'가 주요 프로그램이다.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인 철새 탐방은 추운 겨울에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약을 시작하면 1분여 만에 마감될 정도다. 야생동물치료센터에서는 한 달에 한두 번 센터에 들어온 동물들에 청진기를 대고 심장박동을 들어보는 진료 체험을 해볼 수도 있다.

이외에도 매년 '겨울 철새 맞이 행사'를 진행한다. 을숙도철새공원과 낙동강하구에코센터에서 특별행사와 체험프로그램, 체험부스를 마련한다. 겨울 철새 먹이주기와 야생동물 자연복귀 등 인기 프로그램부터 을숙도철새공원 남단 탐조대에서 겨울 철새를 관찰하는 프로그램 등 다양하다. 사전신청을 하지 않아도 센터 주변 체험부스는 현장에서 바로 참가할 수 있다. 석고방향제, 머그컵, 생물모양 천연비누, 깃털 볼펜 만들기 등에 도전해 볼 수 있다.

## 자연을 걷는 낙동강 생태길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외에도 낙동강 하구를 이해하고 즐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걷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에 을숙도 에코센터-을숙도 문화회관-맥도생태공원-낙동대교-삼락강변공원-구포역-구포나루까지 이어지는 문화생태탐방로를 개설했다. 총 길이는 22km, 도보로 약 6시간이 소요되며 '낙동강 하구 생태길'이라고 불린다. 포장된 도심길과 달리 흙길이 많아 낙동강 하구의 자연과 역사, 문화를 함께 맛보고 즐길 수 있는 코스다. 낙동강 하구에 걸을 수 있는 생태길이 있다는 것은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행운이다.

낙동강 하구 생태길은 '인공 생태통로'를 통해 을숙도 하단부와 상단부가 이어진다. 지금까지 을숙도 상·하단부는 하구둑 횡단도로에 의해 단절되다시피 했는데, 생태통로가 생길 덕분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 생태통로는 길이 50m, 너비 23m의 아치형으로, 통로 중간에 방음벽이 설치돼 동물 길과 인도가 구분돼 있다. 걷다 보면 인간과 동물의 공생·공존이 어떤 의미인지 실감하게 된다.

### 〈이용TIP〉

- 이용시간: 09:00~18:00(입장 09:00~17:00) / 을숙도 철새공원 교육·이용지구 개방 공간 08:00~20:00
- 쉬는 날: 1월 1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 대여: 유모차, 철새탐조용 야외용 쌍안경
- 주차시설: 에코센터 공영주차장(08:00~20:00) / 을숙도 공영주차장(24시간 운영)

##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홍보자료 안내

### 고용노동부, 매월 안전보건 자료 제공·배포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재 사망사고 감축 사업의 일환으로 매월 안전보건 자료를 제공·배포하고 있다. 이에 부산시회는 관련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하고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10월 홍보자료

##### ○ 소규모 건설현장 추락방지시설 설치 지원

- 대상: 산재보험에 가입한 20억원 미만 현장의 추락방지 안전 시설을 설치하는 건설사업주
- 지원: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설치 비용의 65%(최대 2천만원 이내)
- 신청 및 문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 지사

##### ○ 건설일용직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 대상: 특수건강진단 업무 종사 건설일용직 근로자
- 지원: 특수건강진단 비용 전액(연 1회)
- 신청 및 문의: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052-703-0455

##### ○ 모바일 소식지 구독

- 내용: 매월 주요 산업안전보건 정보 제공(카카오톡 플러스 이용)

##### ○ 가연성 자재 등의 보관 가이드라인

- 내용: 건설현장 자재보관 실태 및 취급관리 가이드 등

#### ■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11월 홍보자료

##### ○ 정비·보수·청소 등 비일상 작업 시 사고예방

- 매일 같은 장소, 같은 작업 내용의 반복이 아닌 임시작업으로 고장수리, 보수, 점검, 청소, 해체, 시공 등 정상적인 생산 활동이 아닌 작업으로 안전 작업 절차 및 수칙, 작업 전 점검, 사전 위험성 평가, 보호구 지급·착용 등의 미흡에 따라 상대적으로 사망사고 발생 비중이 매우 높음

##### ○ 주요 사망사고 형태

- 최근 10년간 전체 산업에서 매년 평균 사고 사망자 약 1,065명 발생  
※ 떨어짐(36.1%), 끼임(11.1%), 부딪힘(7.8%), 물체에 맞음(7.2%), 화재·폭발(5.5%) 등의 순으로 다발

#### ■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12월 홍보자료

##### ○ 건설현장 화재·폭발사고 위험 관리대책

- 가연물 관리, 점화원 관리 등

##### ○ 콘크리트 양생 질식사고 예방

※ 각 홍보자료 세부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건설현장 불법 외국인력 관련 협회 추진사항 안내

### 법무부, 외국인 고용제한 해제 및 불법 외국인 특별자진출국 기간 운영

최근 건설현장 외국인력 고용과 관련하여 법무부의 특별대책 발표('18. 09. 20.) 및 단속 강화 등 정부 조치에 대한 회원사의 우려와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우리 협회는 건설현장에 대한 일률적 단속 자제 및 합법 외국인력 고용환경 마련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우리 협회의 건의에 따라 지난 10월 1일부터 「출입국관리법」 단순위반 업체에 대한 고용제한을 해제(사증발급신청 허가)하고, 불법 외국인 특별자진출국 기간 운영 등 업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외국인 고용제한 해제

- 해제 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및 제21조 제2항 위반자(취업불가능·만료비자, 근무처 변경허가 미비 등 단순 위반행위)로 인해 '18. 09. 30. 이전 범칙금·벌금을 납부하여 사법처리가 종결되고 외국인 고용이 제한된 고용주
    - ※ 단, 허위초청, 각종 형사범죄,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고용이 제한된 고용주에 대해서는 기존 지침 그대로 적용하여 외국인 고용 제한
  - 최근 3년('15. 10. 01. ~ '18. 09. 30.) 동안 「출입국관리법」 위반(과태료 처분 제외) 횟수가 2회 이하인 자
- '18. 10. 01. 이후 외국인 불법고용 등으로 사법처리되는 고용주에 대해서는 기존 지침을 그대로 적용하여 외국인 고용을 제한

#### ■ 불법 외국인 특별자진출국 기간 운영('18. 10. ~ '19. 03., 6개월간)

- 자진출국 외국인 「입국규제」 배제
- 적발된 불법체류자는 최대 10년간 입국 규제
- 명단 본국 정부에 통보

#### ■ 기타사항

- 불법체류자 등 출입국사범 신고 ☎1588-7191
- 외국인 관련 문의 ☎1345

##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고강도 불시 안전점검 안내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설비 사고 예방을 위해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건설현장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고강도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동 점검은 타워크레인의 불법개조·허위연식·무등록 등 위법여부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타워크레인 사용중지(필요 시 건설현장 공사중지) 등 행정조치가 있을 예정임에 따라, 회원사에서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과 및 타워크레인 적법관리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했다.

1. 점검기간: 2018. 12. 10. ~ 2019. 01. 25.

#### 2. 타워크레인 관련 신고·제보

- 타워크레인 안전콜센터(☎02-3471-4911)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044-201-3543)

## 2019년 설 명절 대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설치·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설 명절을 앞두고,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신속히 처리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부산시회는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사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1. 운영기간: 2018. 12. 17. ~ 2019. 02. 01.

### 2.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T: 051-460-1041, F: 051-460-1004)

### 3.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주요 사례

- 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
- 나. 하도급대금을 장기어음 등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어음대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 다.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초과)하는 행위
- 라.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현금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일(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보다 장기의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 등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자격등급 취득자에 대한 경력관리 철저 안내

부산시회는 12월 26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자격등급을 취득한 건설기술자가 회원사에 입사한 경우 반드시 소속회사 입사신고를 신속히 처리한 후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안내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1. ~ 5.에서는 가격입찰 후 지체 없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 받아 제6절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고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는 95점, 100억원 이상인 공사는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적격심사 평가기준(별지2 ~ 별지6)에서는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평가를 위해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0점을 감점토록 하고 있으며, 사망·실종 또는 퇴직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50일 이내)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등록기준을 충족시켜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한 경우는 별도로 감점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등급(초급, 중급, 고급, 특급)을 취득한 건설기술자의 경우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기술자보유증명서로만 평가하고 있어 건설공사의 입찰공고일 이전에 4대 사회보험을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입찰공고일 이전에 경력신고(소속회사 입사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격 입찰 결과 1순위임에도 불구하고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해당되어 낙찰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어 회원사에서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안내한 것이다.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여부 조회 방법 안내

### 하도급공사대금 확보에 활용하세요!

부산시회는 12월 27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통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여부를 조회 할 수 있는 방법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하도급자는 공사대금 채권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의무적으로 교부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공사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 간 하도급대금지급합의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하여 보증서 발급이 면제될 수 있다.

이를 위반한 원도급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4호 및 동법 제82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시정명령을 받거나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원도급자인 일부 종합건설업체에서는 상기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 보증기관으로부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만 받은 후 이를 하도급자(전문건설업체)에게 교부하지 않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회원사에서는 하도급공사대금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여부 조회 방법을 안내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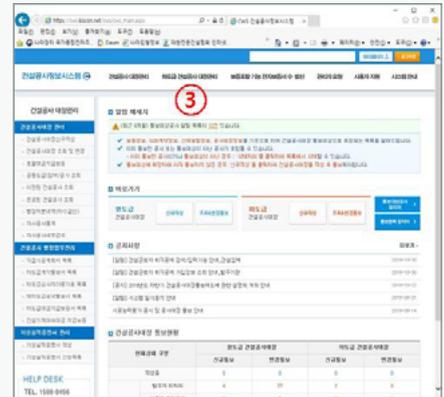
####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여부 조회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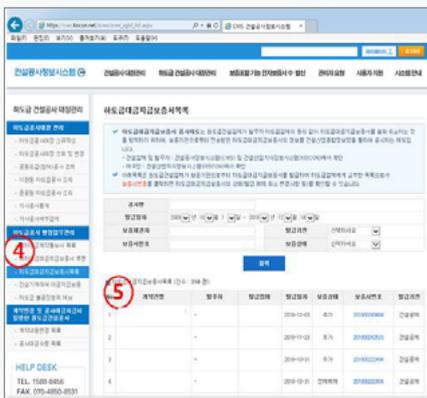
① 키스콘(www.kiscon.net) 접속 → 건설공사대장전  
자통보 → "건설공사정보시스템바가기"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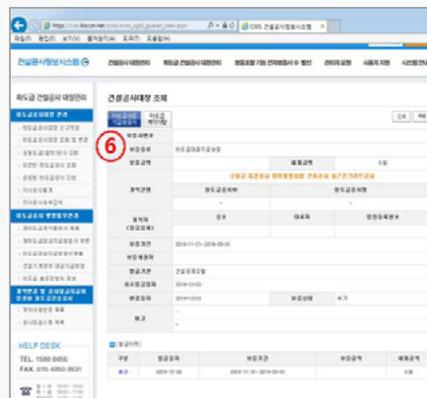
②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③ "하도급 건설공사대장관리" 클릭



④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목록" 클릭  
⑤ 원도급자로부터 교부 받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목록이 조회됨.



⑥ 목록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번호"를 클릭하면 세부내용을 조회할 수 있음.

## '19년도 건설업 외국인력(E-9) 고용허가신청 안내

2019. 01. 03.부터 01. 17.까지 접수

고용노동부에서는 2019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 및 배정계획에 따라 건설업 외국인력 고용허가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받고 있어, 부산시회는 관련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 ■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인원: 1,140명 + α

※ α: 추가도입 인원을 고용개시 후 업종별 신청 현황에 따라 추가 배정

### ■ 고용허가서 신청 및 발급일정

- 접수: 2019. 01. 03.(목) ~ 01. 17.(목)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 전 내국인 구인 노력 필요
    - ※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14일간 구인 활동
    - ※ 신문, 방송, 생활정보지 등 매체 활용 구인 노력한 경우 7일
-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확정: 01. 18.(금) ~ 01. 31.(목)
-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발표: 02. 01.(금) 14:00, 16:00
- 건설업 고용허가서 발급: 02. 07.(목) ~ 02. 12.(화)

### ■ 사업장 외국인력 고용허용인원

연평균 공사금액	고용허용상한인원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15억원 이상	공사금액 × 0.4	공사금액 × 0.3(최대 30명)
15억원 미만	5명(계수 미적용)	3명(계수 미적용)

### ■ 외국인력(E-9) 도입절차

○ 내국인 구인 노력 ⇒ 고용허가서 발급신청 및 발급 ⇒ 근로계약 체결 ⇒ 사증발급신청서 발급 ⇒ 입국 후 취업교육 ⇒ 현장 인도

### ■ 2019년 건설업 외국인력 도입규모 배정 일정

구분	1차	2차	3차
시기	1월	4월	7월
규모	1,140명 + α	700명 + α	440명

※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대한건설협회 외국인력고용지원팀(☎02-3485-8452 ~ 3, 8302)으로 문의하면 된다.

2019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시중노임단가) 안내 

## 전년도 하반기 건설업 평균임금 대비 3.38% 상승 210,195원

올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결과 일평균 임금이 전년도 하반기에 비해 3.38% 오른 210,195원으로 나타났다.

부산시회는 건설공사 예정가격 작성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노무비 산출 근거로 활용되는 「2019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시중노임단가)」을 회 원사에 안내했다. 해당 조사 노임은 1일 8시간 기준(잠수부는 6시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1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적용된다.

주요 직종별 임금 현황은 다음과 같다.

번호	공표일 직종명	2019. 01. 01.	2018. 09. 01.	2018. 01. 01.	2017. 09. 01.
		1001	작업반장	153,186	145,013
1002	보통인부	125,427	118,130	109,819	106,846
1003	특별인부	152,019	141,507	133,417	127,391
1006	비계공	224,359	208,195	196,261	187,771
1007	형틀목공	201,951	197,929	189,303	179,290
1008	철근공	210,096	199,266	189,585	179,665
1012	용접공	198,711	180,350	169,201	163,001
1013	콘크리트공	198,242	199,737	176,062	167,893
1019	포장공	176,515	162,899	154,530	148,118
1021	조적공	185,725	172,091	161,334	153,959
1023	건축목공	200,925	188,225	175,760	169,062
1024	창호공	187,530	175,176	163,191	157,823
1025	유리공	181,240	167,287	155,803	148,516
1026	방수공	148,971	139,009	130,819	126,051
1027	미장공	209,611	188,228	175,547	169,508
1028	타일공	199,848	187,087	174,390	164,998
1029	도장공	184,508	174,277	153,890	148,659
1030	내장공	189,600	177,322	165,367	160,195
1038	조경공	169,758	159,410	147,733	147,748
1039	배관공	176,011	163,004	148,689	143,420
1048	건설기계운전자	187,069	181,074	162,022	154,499

※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신기술 원가정보 ⇒ 임금실태를 참조하면 된다.

## 2019년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 안내

부산시회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를 회원사에 안내했다.

### ■ 표준품셈 주요 내용

#### ○ 편제개편

- 50장 2,317항목 → 43장 1,332항목

#### ○ 가설공사, 조경공사

- 터널방음문, 잔디블록 포장 신설

#### ○ 돌쌓기 및 헐기

- 돌쌓기 규격 간소화(7개 → 3개)

#### ○ 기계경비

- 근로시간 단축 관련 건설기계장비 연간표준가동시간 조정

ex) 타워크레인 2,000시간 → 1,776시간(11% 감소)

#### ○ 궤도공사

- 시공특성 반영한 장비 조합, 직종 조정(굴삭기 → 굴삭기+부착용 집게, 특별인부, 일반기계운전사 → 궤도공)

#### ○ 조적공사

- 작업 높이 구분(3.6m 이하, 초과)

#### ○ 돌공사

- 습식공법 적용 구분(바닥, 계단부)

#### ○ 미장공사

- 기계바름: 모르타르 양생시간 반영

### ■ 표준시장단가 주요 내용

#### ○ 공종체계 정비

- 1,933항목 → 1,862항목

#### ○ 시공단가 조사반영 현실화\* 및 공사비 지수\*\* 반영 조정

\* 관공사(GRP관, PVC이중벽관), 도로배수시설 등 100공종

\*\* 1,762공종

※ '18 하반기 대비 3.39% 상승

※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신기술 원가정보 ⇒ "표준품셈" 또는 "표준시장단가"에서 다운로드받아 보면 된다.

##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공고

협회는 발주기관의 관급자재 지급으로 인한 전문건설업계의 매출액 감소 및 하자책임주체의 불명확으로 인한 하자분쟁 발생 등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19년부터 3년간 적용되는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 신청 시 유리제품(접합, 강화, 복층유리)이 신규로 지정 신청됨에 따라 동 제품의 지정 반대를 중기부, 국토부, 기재부, 행자부, 중기중앙회 등에 지속 건의한 결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우리 협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유리제품을 제외하고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을 공고하였다.

※ 자세한 사항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되며,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http://www.g2b.go.kr)) ⇒ 목록정보시스템 ⇒ 일반검색 ⇒ 품명검색」에서 대상품목을 검색할 수 있다.

## 최근 개정 하도급법 안내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정 하도급법 요약·정리 배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최근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하여 배포하였기에 부산사회는 관련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당특약 금지 조항 도입(2014. 02. 14. 시행)
- 자진시정 면책제도 도입(2015. 10. 14. 시행)
- 신고포상금제 도입(2016. 01. 25. 시행)
- 하도급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2016. 01. 25. 시행)
- 보복 행위에 대한 벌점 상향(2016. 12. 27. 시행)
-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 요건 확대(2016. 12. 27. 시행)
-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에 참여한 원사업자에 대한 벌점 경감 기준 신설(2016. 12. 27. 시행)
- 기술자료 정의 규정 개선(2016. 12. 27. 시행)
- 하도급대금의 대물변제 허용 요건 강화(2017. 10. 19. 시행)
-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2017. 09. 29. 시행)
- 원사업자의 구매 확인서 발급 의무화(2018. 05. 01. 시행)
-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금액 상향(2018. 05. 01. 시행)
- 과태료 부과 기준 위임 근거 규정 마련(2018. 05. 01. 시행)
- 법 위반행위 억지력 제고를 위한 벌점제도 보완(2018. 10. 18. 시행)
- 서면실태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2018. 10. 18. 시행)
- 기술자료 관련 서류의 보존기한 연장(2018. 10. 18. 시행)
- 기술자료 요구 시 그 사용기간, 반환·폐기방법 등 서면기재 의무화(2018. 10. 18. 시행)
- 정액과징금 기본금액 상한 인상(2018. 10. 18. 시행)

※ 각 조항별 세부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 Q & A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지난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같은 해 3월 27일 공포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2016년 7월 28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거쳐 9월 28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의 금지와 금품 등 수수 금지를 핵심내용으로 합니다. 헛갈리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청탁 금지법. 2018년에 개정된 내용을 기준으로 한 구체적 사례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니다.

### CASE 01

#### 금품 등의 수수 금지 1

**Q**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점심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 저녁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 다음 날 오전에 5만원 이하의 선물을 받은 경우 허용되는지?

**A**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받은 식사와 선물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법적으로 평가할 때 1회로 평가할 수 있고, 선물과 식사를 함께 제공받은 경우 합산하여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무 관련자로부터 1회 11만원 상당의 선물을 식사를 제공받았으므로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 CASE 02

#### 금품 등의 수수 금지 2

**Q**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축의금·조의금은 허용되는데, 여기서 경조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A** 경조사의 범위는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결혼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장례에 한정됩니다. 그 밖에 생일, 돌, 회갑, 집들이, 승진, 전보, 퇴직, 출판기념회 등은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CASE 03

#### 금품 등의 수수 금지 3

**Q** 공직자 등이 축의금으로 15만원을 받은 경우 가액한도를 초과한 부분(10만원)만 반환하면 되나요?

**A**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수수한 경우 초과하는 부분만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통념에 부합하므로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부분만 반환하면 제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제공자는 제공한 경조사비 전액을 기준으로 제재됩니다.

#### CASE 04

### 금품 등의 수수 금지 4

**Q** 공직자 등에게 5만원의 범위 내에서 백화점·전통시장·모바일 등의 상품권을 선물로 줄 수 있나요?

**A**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선물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100만원까지 수수가 허용되고,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상품권은 금액에 상관없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상품권을 주는 경우에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 CASE 05

### 금품 등의 수수 금지 5

**Q** 직무 관련자 10명과 공직자가 함께 식사를 한 후 직무 관련자 10명이 각각 11만원씩 부담하여 식사비용 110만원(인당 10만원)을 결제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A**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자 10명으로부터 10만원의 식사 접대를 받은 것입니다. 2인 이상이 가담하여 위반행위의 실현에 기여한 경우 가담자 각자가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 제1항)되므로 직무 관련자 10명은 각자 공직자에 대한 식사 접대 금액인 10만원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 CASE 06

### 부정청탁 성립요건 관련 1

**Q** 부정청탁을 하였으나 그에 따라 공직자 등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재 대상이 되나요?

**A**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을 한 내용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청탁행위 그 자체를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정청탁 내용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도 부정청탁을 한 자는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

#### CASE 07

### 부정청탁 성립요건 관련 2

**Q** 국회의원이 특정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한 경우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나요?

**A** 국회의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한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공익적 목적이란 국가, 사회 일반 다수인의 이익 또는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하므로 특정 제3자의 고충민원이 다수의 이익과 관련되거나 관련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익적 목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CASE 08

### 부정청탁 성립요건 관련 3

**Q** 국회의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청탁을 한 경우에도 예외사유에 해당하나요?

**A** 제3자의 고충민원을 그대로 전달한 경우에만 예외사유에 해당될 수 있고, 이를 넘어 내용을 본질적으로 변경하여 새로운 청탁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CASE 09

### 부정청탁 성립요건 관련 4

**Q** 상급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하급 공직자 등에게 지시를 하여 직무를 처리한 경우 하급 공직자 등은 처벌받나요?

**A** 상급 공직자 등은 부정청탁에 따라 하급 공직자 등에 대해 지시를 하여 직무를 처리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고, 하급 공직자 등은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따른 것임을 안 경우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시에 따라 처리하면 역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08

## 건설 관련 유권해석 및 판례

유권  
해석

01

### 건설공사 지체상금 계산방법은?

#### [질의]

지체상금 계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여부?

#### [회신]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계약금액에 대하여 지체상금률을 곱할 것인지,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계약금액에 지체상금률을 곱할 것인지는 국가 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은 없으나,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계약금액에 대하여 지체상금률을 부과하는 것이 지체상금 부과 관례라 보여짐.

[근거] 국민신문고>민원>민원·정책 질의응답 (2018. 11. 20.)  
(담당부서: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유권  
해석

02

###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 관련

#### [질의]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건설공사 시 하도급계약을 대표사인 A사 단독명의로 수급사업자와 체결하였고, 하도급대금도 A사가 전액지급하는 경우 공동수급회사에게 지분율만큼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가 있는지 여부?

#### [회신]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한 사업자이고 하도급법 제2조 제9항은 건설위탁을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는 것과 건설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하도급계약이 대표사 단독명의로 체결되었고 하도급대금도 대표사가 전액 지급한 경우라면 공동수급 회사 간의 내부관계와는 별개로 대표사인 A만을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로 보아야 하므로 공동수급회원은 원칙적으로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로 볼 수는 없을 것임. 다만, 공동수급회원이 하도급업체 선정, 작업지시 등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회사에게도 위탁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에 해당되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 의무가 있는 것임.

[근거] 국민신문고>민원>민원·정책 질의응답 (2018. 05. 28.)  
(담당부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업거래정책국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

건설  
판례  
01

서울고등법원  
2018. 04. 27.  
선고 2017누  
81252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 ① 원고와 ○○은 업종이 다른 건설업자이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본문이 제한하는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 대한 하도급’이 아니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위 본문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 ② 설령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내용인 조경공사가 시설물유지관리업 내에 포함된다고 보아 원고와 ○○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종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발주자인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서면승낙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③ 결국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어느 모로 보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을 위반한 계약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5조 제2항 및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별표1] 29의 규정과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제2호중)을 고려할 때,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은 다른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 간의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위 조항 단서에 따라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발주자의 서면승낙 하에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만 하도급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즉 위 조항에 따라 동일한 업종으로 등록된 건설업자 간에는 발주자의 서면 승낙이 있으면 공사의 일부 하도급이 가능하나, 다른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 간에는 발주자의 서면 승낙이 있더라도 공사의 일부 하도급이 금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시설물유지관리업종에 해당하는 이 사건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를 도급받은 원고로서는 발주자인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서면 승낙을 받았다 하더라도 조경식재공사업 등의 업종으로만 등록된 공사업자인 ○○에게 이 사건 아파트 하자보수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 ② 결국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을 위반한 계약이므로, 이를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판단

가. 관련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 ①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행정법규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아니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두40531 판결 등 참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은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

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본문은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들 사이의 하도급을 금지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 자체로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 대한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그 단서조항에 의하여 발주자의 서면 승낙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하도급을 허용하는 규정으로 해석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 대한 하도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조항에 의하여 다른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들 사이의 하도급까지 금지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라 할 것이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실내건축공사업' 및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도장공사업'으로 각 전문공사 업종등록을 마친 건설업자이고 ○○은 '조경식재공사업' 및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으로 각 전문공사 업종등록을 마친 건설업자로서, 원고와 ○○은 업종이 다른 건설업자이고(피고 역시 원고와 ○○가 업종이 다른 건설업자라는 사실은 다투지 아니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은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들 사이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에게 이 사건 아파트 조경공사를 하도급한 것은 이와 같이 다른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 대한 하도급이라 할 것이어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본문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제2호증)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해석에 배치되는 취지의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은 법령의 해석을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대외적 구속력도 없어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근거가 될 수 없다.]

③ 설령 이 사건 아파트 조경공사를 시설물유지관리업 내에 포함되는 하위 세부작업으로 보아 원고와 ○○의 업종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발주자인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하도급승인조서를 받았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조경식재공사업' 및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으로 각 전문공사 업종등록을 마친 ○○에게 조경공사를 하도급하는 것인 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서면승낙하지 않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서면으로 승낙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단서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재판장 판사 양현주, 김무신



## 세계에서 가장 어지러운 집

### 크시비 도메크

‘발트해의 진주’로 불릴 만큼 아름다운 마을인 폴란드 소포트(Sopot)시에는 누군가 쥐어짜 것처럼 일그러진 건물이 있다. 마치 그림 속 장면을 보는 듯한 이 건물은 ‘크시비 도메크(Krzywy Domek)’, 폴란드어로 비뚤어진 집이란 뜻이다.

이 건물은 도시의 가장 유명한 술집, 레스토랑, 상점들이 즐비하게 서 있는 도로에 세워졌다. 틀에 박힌 모양의 상가가 즐비한 거리에서 홀로 춤을 추는 듯한 이 건물은 2003년 완공되자마자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폴란드 관광 명소로 떠올랐다. 당시 설계를 맡았던 건축가 슈티쉬 잘레브스키는 고민 끝에 폴란드의 유명 동화 삽화가인 잔 바신 스탠서와 스웨덴 출신 작가 퍼달버그의 동화 작품에서 영감을 얻어 건물의 외관을 구상했다. 석재 외벽과 유리창으로 지어진 크시비 도메크의 곡선 지붕은 에나멜 타일로 장식됐다. 푸른빛의 에나멜 타일은 빛을 받으면 물가에 비춘 것처럼 일렁이는 효과를 내 건물 특유의 어지러운 느낌을 극대화하는 데 안성맞춤이다. 밤이 되면 건물의 기이한 외관이 더 돋보인다.

이 건물 안에는 사무실, 소매점, 음식점, 지붕 있는 시장, 박물관이 있다. 전체적인 구조의 배열과 규모는 거리의 다른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며 정해졌지만, 건축물 자체의 외형은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는 희한한 형태이다. 구부러진 선, 부풀어 오른 형태의 지붕, 재치가 느껴지는 코니스와 프리즈, 그리고 찌그러진 문과 창문으로 구성된 비뚤어진 집의 모습은 초현실주의 회화의 한 장면을 보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뒤집힘과 뒤틀림으로 설명되는 이 건물의 모습은 역동적인 움직임의 순간 정지 상태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 회원사 질의·응답

### Q.01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시  
실질자본금 적격여부 확인 시  
일시적 조달 예금의 확인기간은?

>> 건설업 실질자본금 평가 시 예금(금융기관에 예치한 요구불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증권 예탁금 및 그 밖의 금융상품)은 건설업관리규정 [별지2] 건설업체 진단지침 제15조3항에 따라 진단기준일 현재 진단을 받는 자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잔액증명과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간의 은행거래실적증명(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일까지 기간의 은행거래실적증명을 말한다)으로 확인하며, 이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와 질권 설정 등으로 사용 또는 인출이 제한된 예금은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제15조 제2항에 따른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을 계산할 때에도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Q.02

유사건설공사(물품납품·용역)의  
건설공사대장 통보 시점?

>> 물품납품·용역으로 계약했으나 해당 **건설업등록과 시공(현장설치)**을 입찰참가 자격으로 제한하고 **건설공사실적증명서** 발행 또는 관련 증빙서류(건설공사 시공확인서, 입찰공고문, 분할납품통지서, 계약서 등)를 제출한 경우 건설공사 실적으로 인정함.  
>> **건설공사대장 통보는 건설공사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KISCON 건설공사대장에 통보**해야 함.

### Q.03

2018년도 건설(전문)공사  
실적신고 시 겸업 업체의  
재무제표 제출?

>> 종합·전문건설업 겸업업체는 재무제표확인원(또는 감사보고서) 등을 1개의 협회에만 입력·신고하고 평가된 재무상태 자료는 공동 활용함.

재무제표 신고 일원화 대상 협회	
겸업업체	제출처
종합, 전문 겸업업체	대한건설협회
전문과 기계설비, 시설물 겸업업체	대한전문건설협회
기계설비와 시설물 겸업업체	대한국계설비건설협회

## Q.04

아파트 발주공사의 경우  
수의계약 가능 금액은?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선정토록 하고 있음.
-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 3항 관련 **【별표2】** 수의계약의 대상에서는 아래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 수의계약의 대상

1.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
2.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
3. 분뇨의 수집·운반(정화조 청소 포함)과 같이 타 법령이나 자치법규에서 수수료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
4.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한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5. 본 공사와의 동질성 유지 또는 장래의 하자책임 명확성을 위하여 마감공사 또는 연장선상에 있는 추가 공사를 본 공사 금액의 10% 이내에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하는 경우
6. **공사 및 용역 등의 금액이 300만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인 경우로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은 경우. 다만, 이 경우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사 및 용역 등을 시기나 물량으로 나누어 계약할 수 없다.**
7. 일반경쟁입찰 또는 제한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최초로 입찰에 부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8. 영 제5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 만족도를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 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관리방법의 변경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교체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9.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사업자(별표 7의 사업자로서 공사 사업자는 제외한다)의 사업수행실적을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 다시 계약이 필요하다고 영 제14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한 경우
10. 그 밖에 천재지변, 안전사고 발생 등 긴급한 경우로서 경쟁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선조치 후보고 가능)

## Q.05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대상이  
타 산업과 동일하게 8일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 가입토록  
확대 시행되었는데 그럼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는 안 해도 되는지?

- >> 건설현장은 건설업 본사와 현장을 구분하여 별도의 사업장으로 분리 적용하며, 이를 위해서는 건설현장에 대한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
- >> 이를 하지 않을 경우 본사 기준으로 근무일수를 산정하므로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의 사업장 지도점검 시 가입대상 누락 등으로 인한 보험료를 소급·추징당할 수 있음.
- >> 따라서, 공사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계약서에 보험료 사후정산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국민연금·건강보험료가 반영되어 있다면 반드시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를 해야 하며, 해당 현장에서 8일 이상 근로한 건설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함.



“2018년 해외선진건설현장 시찰”

## 세계 최대의 낙농국가 뉴질랜드를 다녀와서...



지산특수토건(주)  
대표이사 김형겸

뉴질랜드는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하는 버킷리스트 중의 한 나라로 회자되는 나라다. 그만큼 이번 ‘해외선진건설현장 시찰’은 우리 사회 회원사들이 높은 참여도를 보인 뜻깊은 여행이었다. 우리 협회 회장님과 회원사 47명, 협회 직원 3명, 여행사 스태프 2명 등 총 53명이 함께 한 이번 여행은 지금까지 산업시찰 중 가장 많은 회원사가 함께 했다.

뉴질랜드는 크게 북섬과 남섬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섬들이 모여 이루어진 나라다. 우리에게 6.25 전쟁 때 연연방의 일원으로 참가하여, 우리를 도와준 피를 나눈 형제국가라고 생각된다. 또한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그 역사가 짧은 편이지만, 원주민인 마오리족과 영국 등 유럽에서 들어 온 이주자들이 서로 충돌하고 타협하며 공존하게 된 특별한 역사가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부산 김해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거쳐 뉴질랜드의 오클랜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다시 국내선을 이용하여 퀸스타운 공항까지 3번의 경유로 약 15시간 이상의 장거리 비행을 하였다. 그럼에도 우리 일행 얼굴



에는 피곤함을 보기가 힘들었다. 아마도 우리 앞에 펼쳐질 뉴질랜드 여행에 대한 설렘과 우리가 살고 있는 곳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맑고 깨끗한 공기와 끝없이 이어지는 초원, 가파르고 날카로운 높은 산 위에 펼쳐진 만년설 등에 대한 기대감이 여행의 피로를 잊게 한 것 같았다. 특히, 퀸스타운의 주변 경관은 동화 속에 나올 듯한 절경들이 이어지면서 탄성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참가인원이 많아 1호차, 2호차로 나눠 탑승해 첫 여행지인 번지점프장으로 향하는 중 해발 2,334m의 더블 콘 마운틴을 마주하게 되었다. 이곳이 그 유명한 “반지의 제왕” 촬영지라고 한다. 번지점프는 이제 한국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액티비티(아외활동) 중 하나지만 뉴질랜드, 바로 이곳 카와라우 다리에서 세계 최초로 시작되었다고 한다. 높이는 43m로 그리 높지 않지만 막상 내려다보면 현기증이 날 정도로 아찔한데, 번지점프 체험을 여성이 남성보다 25배나 많이 한다고 하니 의외가 아닐 수 없다.

다시 탄광촌의 정기가 남아있는 애로우타운(사금 채취마을)을 둘러보고 뉴질랜드에서 세 번째로 큰 와카티푸 호수에서 비행기 엔진을 장착한 제트보트에 탑승하였다. 보트 세 대에 나누어 탑승하였는

데 장시간 비행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스틸 만점의 재미를 만끽하였다. 퀸스타운에서 2시간 거리의 테어나우로 이동하였다. 저녁 늦은 시간이었는데도 그리 어둡지 않아 주변의 초지와 강, 만년설 등을 파노라마 영화 보듯 감상하며 지루하지 않게 첫 번째 숙소에도 도착하였다.

뉴질랜드 남섬 관광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밀포드 사운드의 길목인 테어나우에서 1박을 하고 호텔 주변을 산책하니 가랑비가 무슬무슬 내리면서 피오르랜드 국립공원 쪽으로 안개가 가득하여 내심 ‘국립공원 입장이 가능할까?’라는 걱정도 되었다. 조식 후 차량에 탑승하니 가이드가 밀포드 사운드는 약 1만 2천 년 전 빙하에 의해 형성된 온대 우림지대에 위치하여 1년에 약 7,000mm 이상 비가 쏟아져 세계 최고의 강우량을 기록하는 지역이라는 설명과 함께 어제도 비가 많이 내려 입장이 불가하다고 재차 안내하였다. 우리는 많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시 퀸스타운으로 향했다.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기상악화로 밀포드 사운드 일정을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준비한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체 프로그램은 TSS 언슬로우 증기선(TSS Earn Slow Lake Cruise)을 타고 약

2시간가량 와카티푸 호수 경관을 감상하는 것인데 마치 과거로 돌아간 느낌을 받았다. 배의 하부에 위치한 기관실의 엔진이 마치 어릴 때 증기기관차를 보는 듯한 모습이었다. 석탄을 이용하여 그 열로 증기를 발생하여 운행하는 말 그대로 증기선이었다. 이 증기선을 타고 가다 보면 그림 속에 나올 것 같은 빨간 지붕의 집들이 펼쳐져 마치 동화 속의 한 장면 같이 정말 아름다웠다. 하선 후 3일 차 저녁식사는 중앙회 김영운 회장님께서 후원하신 만찬이라는 소식에 참석 회원사 모두는 환호와 뜨거운 박수로 감사의 뜻을 전하고 그 유명한 양고기 바비큐 식사를 하였다.

다음 날에는 퀸스타운 보스힐 곤돌라를 탑승하여 퀸스타운 전경을 감상하는 호사를 누렸다. 급변하는 날씨 때문에 시내 전경을 보기 힘들다고 하였는데 막상 스카이라인 위에 올라가니 시내의 전경이 한 폭의 그림처럼 우리 일행 앞에 펼쳐졌다. 참으로 아름답고 나지막한 건물들로 이루어진 자연 그대로의 전원마을 같았다.

퀸스타운을 뒤로하고 다음 행선지인 와나카로 향했다. 가는 도중 와나카 퍼즐링월드에 들러 신비한 착시의 세계와 미로찾기 체험, 53도 기울어진 와나카의 사탑 등을 둘러보며 잠시나마 동심의 세계로 빠져보았다. 우리 일행을 맞이하는 와나카 호수는 뉴질랜드에서 네 번째로 큰 아름다운 호수로서 리에겐 너무 부러운 환경이다. 호수 주변에 약 2m 짜리 민물장어와 1m 짜리 연어도 놀라움을 자아냈지만, 주변의 자연환경은 숨을 멎게 하는 탄성이 끊임없이 나올 정도로 장관이었다. 4일 차 저녁식사는 우리 사회 김세원 회장님의 강추와 특별 후원으로 옛지워터 와나카호텔 레스토랑에서 현지식으로 럭셔리한 만찬을 하였다. 또한 와나카 지역에서의 최고의 호텔에 묵을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사회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어느덧 이번 여행의 반을 지나 뉴질랜드에서 가장 높은 아오라키 마운트 쿡(Aoraki Mount Cook)으로 가기 위해 아침 일찍 숙소를 나왔다. 약 2시간 40분 정도 이동하니 뉴질랜드에서 가장 거대한 평지 캔터베리 대평원을 거쳐 세계적인 빙하 지층으로 이루어진 아오라키 국립공원에 도착하였다. 아오

라키는 뉴질랜드의 원주민인 마오리족의 언어로 '구름을 뚫은 봉우리'라는 뜻으로, 뉴질랜드에는 해발 2,300m 이상의 높은 산이 223개나 있다. 정상 부근은 만년설로 덮여 있는데, 매년 80m 정도 강설량을 보이며 이로 인하여 매년 7m 두께의 얼음층이 형성된다고 한다. 빙하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에메랄드 빛 푸카키호수(뉴질랜드에서 7번째로 크다)는 우리의 눈을 사로잡기에 충분하였다. 마운트 쿡의 빙하계곡을 감상하며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시간이 되었다. 1시간 30분 정도의 가벼운 트레킹으로 캔터베리 대평원을 지나 도착한 데카포 빙하호수(뉴질랜드에서 10번째로 크다)와 뉴질랜드 최초의 교회, 양치기 개 동상을 관람하고 난 후 3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크라이스트처치로 향했다. 저녁 무렵 저물어가는 태양 아래 헤글리 공원에서 산책 후 크라이스트처치국제공항에서 북섬의 최대 도시인 오클랜드국제공항으로 출발하였다.

다음날 세계 5대 동굴 안에 들어간다는 와이토모 반딧불 동굴을 관람하기 위하여 아침 일찍 나섰다. 매일 끝없이 펼쳐진 초지나 셀 수 없이 많은 양, 높은 산, 빙하, 호수 등의 자연경관만 보다가 오늘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시가지지를 보면서 새삼 도시의 반가움을 느끼면서 시내를 벗어났다. 와이토모 동굴에

도착하니 수 없이 많은 관광객으로 북적이고 있었는데 긴 줄이 이어질 정도로 북섬에서는 유명한 관광 명소 중 한 곳이라고 한다. 우리는 인원이 많아 몇 그룹으로 나누어 동굴 관람에 들어갔는데 환경이 오염되지 않은 천혜의 석회동굴이었다. 동굴 천장에 무수히 많은 반딧불을 보고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감출 수 없었다. 동굴에 서식하는 반딧불은 정확히 글로우웜(Glowworm) 이라는 개뿔벌레의 성충으로, 마치 밤하늘에 무수한 별들이 반짝이는 은하수를 보는 것 같았다.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난 후 작은 배를 타고 동굴을 지날 때는 마치 우리가 다른 세계에 와 있는 느낌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였다.

황홀한 동굴탐방을 마치고 유태와 온천의 도시 로토루아로 향했다. 로토루아로 가는 길목에서 신기한 농장체험을 했다. 뉴질랜드 전통농장에서 트랙터를 타고 양, 사슴 등 각종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고 키위의 봉고장인 뉴질랜드산 자연산 물과 키위주스도 시음하는 시간도 있어서 눈과 입이 즐거운 시간이었다. 우리 일행은 레드우드 수목원에서 자연산림욕을 하며 또 한번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낮선 신비의 숲속에는 100m 이상으로 치솟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무인 레드우드가 뽀뽀 서 있는데 그 장엄함에 숙연해졌다. 바로 옆 5분 정도

거리에는 우리나라 사람이면 누구나 즐기는 야외 노천온천이 있어서 잠시나마 기나긴 여행의 피로를 풀면서 휴식을 취했다. 이날 저녁 만찬은 향이 식 디너를 즐기고, 마오리 민속쇼 관람과 전통춤 배우면서 다 함께 즐기는 시간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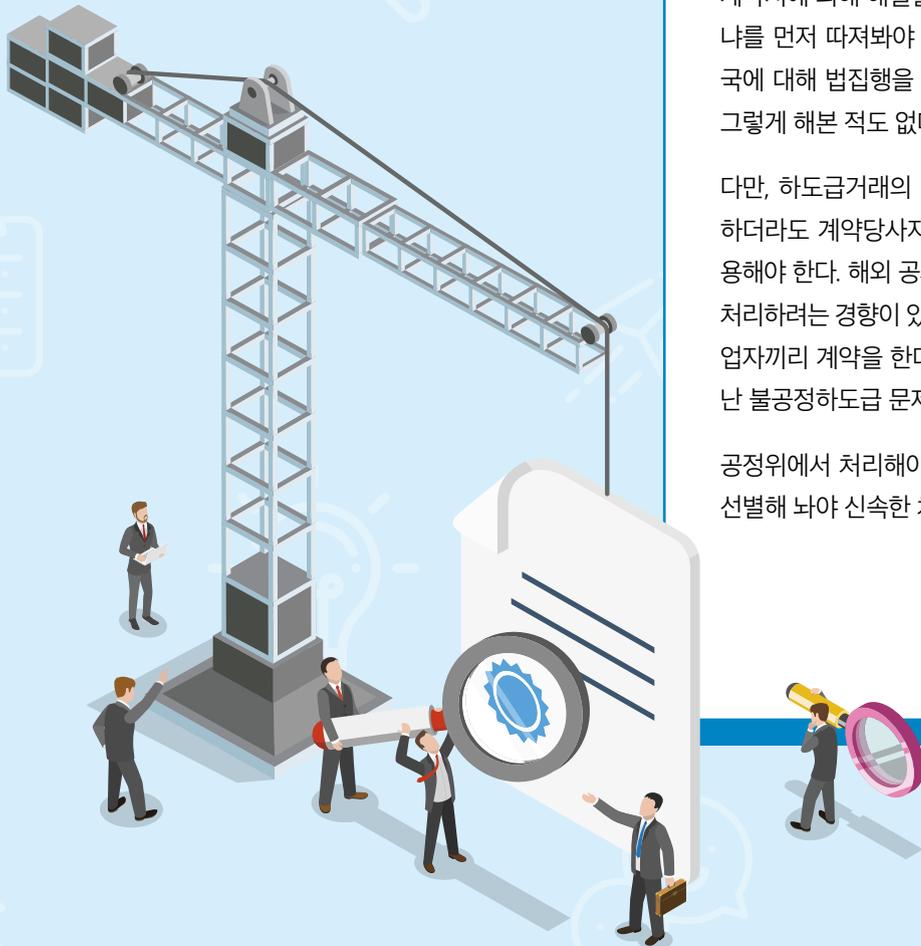
다음날은 여행의 마지막 일정이라서 그런지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였다. 로토루아는 대표적인 지열 지대로 마오리 문화와 자연을 융합시킨 관광지라고 한다. 테푸이아 민속촌 옆에 지열로 데워진 지하수가 하늘로 솟구치는 간헐천, 진흙이 물처럼 끓고 있는 듯이 보이는 열탕 등 지열지대와 마오리 전통가옥들에서 우리는 새로운 문화와 건축양식을 접할 수 있었다. 발길을 돌려 뉴질랜드 전통농장을 그대로 재현한 아그로돔 팜 투어를 이어갔다. 실내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다채로운 양 경연 대회와 양털깎이쇼, 새끼 양 젖 먹이기 등 다채로운 문화를 관람하였는데, 세계 많은 나라에서 오는 관광객이라 그런지 친절하게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주는 헤드셋을 보았을 때 대한민국의 국력이 세계에 널리 뻗어나가는 자긍심도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 날 점심은 스카이라인 곤돌라를 타고 전망대에 올라 로토루아 지열지대를 내려다보며 뷔페식으로 끝나고 다시 오클랜드로 향했다. 오후의 도시 오클랜드의 마지막 일정에 다가서고 있다. 부유층의 아름다운 저택들이 즐비한 타마키를 경유하여 바닷가 전망이 아름다운 조셉 세비지 메모리얼 파크에서 우리의 마지막 일정을 마치고 공항 부근 숙소로 이동하여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이번 여행의 기획부터 진행과 마무리까지, 나아가 늘 회원사 곁에서 사진사 역할도 마다 않고 봉사해주신 김세원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아울러 여행에 함께 하시지도 못하면서 출국장까지 나오셔서 큰 후원을 해주신 8대 김영주 회장님과 금일봉을 하사하신 명예회장님, 원로고문님들께도 감사드린다. 이번 여행에 적극 참여하시고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회원사 대표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마지막으로 여행 내내 우리 회원사를 위하여 봉사해주신 협회 사무처 직원들에게도 감사드린다.



하도급 분쟁 해법

# 해외에서 일어난 불공정거래 처리법



우리나라의 전문건설업체는 주로 국내 대기업과 동반으로 해외 공사에 투입된다. 이라크, 두바이, 베트남 등 국내 대기업의 큰 공사현장에 협력사로서 진출한다. 이럴 때 불공정한 문제가 불거지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어느 전문건설업체가 국내 굴지의 건설업체와 해외 공사에 투입됐다 고초를 겪었다.

자세한 경위를 들어보니 공사착공이 당초보다 무려 2년이나 넘게 지연됐다. 이 과정에서 국내의 경제상황, 자금여력, 인력수급 등에 변화가 발생하고, 현지에 장비와 인력을 대기시키고 있어 공사비가 대폭 증액됐다. 특히 공사재개가 곧 될 듯 말듯하면서 안 되고 2년이 소요되면서 인력, 자재, 설비임차비 등이 막대하게 선 투입됐다.

그렇다면 이번 건의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할까? 이것도 결국 계약서에 의해 해결될 일이다. 그렇지만 이 건은 하도급법 적용이 되는냐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통상적으로 하도급법이나 공정거래법은 외국에 대해 법집행을 하기 쉽지 않다. 특히 하도급법 적용은 더 어렵고 그렇게 해본 적도 없다.

다만, 하도급거래의 성립요건을 따져보고 판단해야 한다. 해외공사를 하더라도 계약당사자가 국내 법인끼리 했다면 당연히 하도급법을 적용해야 한다. 해외 공사의 특수관계를 고려해서 통상적으로 민사적으로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공사장이 어디이건 간에 국내에 주소를 둔 사업자끼리 계약을 한다면 곧 국내법을 적용한다. 따라서 해외에서 일어난 불공정하도급 문제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서 처리할 수 있다.

공정위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과 민사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을 미리 선별해 놔야 신속한 처리를 기대할 수 있다.

**[출처]** 대한전문건설신문  
공정거래연구소 이경만 소장의 하도급 분쟁 해법

# 11

## 회원사 현황

### 부산시회 신규회원 현황

2018. 10. 01. ~ 12. 31.

상 호(대표자)	주 소	상 호(대표자)	주 소	상 호(대표자)	주 소
 가온텍(주) <b>정 태 만</b>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문대로 57, 비동 003호 (부곡동, 부산가톨릭대학교) <b>T. 051-513-9004</b> 보유업종: <b>습식방수</b>	 (주)경화산업개발 <b>주 영 현</b>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로171번길 26, 636호 (전포동, 더블루오피스텔) <b>T. 051-807-4509</b> 보유업종: <b>비계-구조물해체</b>	 (주)길산 <b>최 창 길</b>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567, 3층 (남산동) <b>T. 051-515-9665</b> 보유업종: <b>철근-콘크리트</b>
 부강건설(주) <b>박 창 구</b>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 65, 4층 407호(수안동, 태림빌딩) <b>T. 051-555-5016</b> 보유업종: <b>실내건축</b>	 (주)신성굴착 <b>김 대 섭</b>	부산광역시 강서구 식만로 13-23(죽림동) <b>T. 051-971-9764</b> 보유업종: <b>보링·그라우팅</b>	 (주)아성정보 <b>김 창 범</b>	부산광역시 강서구 죽동길405번길 24-19(죽동동) <b>T. 051-636-5585</b> 보유업종: <b>금속구조물-창호-온실</b>
 (주)오에스산업개발 <b>김 상 권</b>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해맞이로 173 <b>T. 051-727-7725</b> 보유업종: <b>비계-구조물해체</b>	 진화건설(주) <b>장 재 학</b>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99번길 18, 601호 (재송동, 센텀프라다) <b>T. 051-781-1188</b> 보유업종: <b>습식방수</b>	 (주)한성아이디 <b>임 영 주</b>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천로 339번길 28, 107동 상가 206호 (낙민동, 낙민동한일유엔아이아파트) <b>T. 051-513-7112</b> 보유업종: <b>실내건축</b>
 현복엔지니어링 <b>김 양 완</b>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2로 14, 1층 (만덕동, 삼성종합상가) <b>T. 051-341-3890</b> 보유업종: <b>상·하수도설비</b>	 현송건설(주) <b>이 순 연</b>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강로 179, 9층 (장전동, 대성빌딩) <b>T. 051-513-0135</b> 보유업종: <b>비계-구조물해체</b>		

● 부산 전출입 전문건설업체 현황

2018. 10. 01. ~ 12. 31.

전출업체 현황	전입업체 현황
(주)고래건설(대표: 심만식, 경기)	가양건설(주)(대표: 김기량, 경북)
(주)다통(대표: 박지혜, 서울)	(합자)기경건설(대표: 황봉욱, 경남)
-	(주)남영건설(대표: 김남연, 경북)
-	(주)세경지텍(대표: 최창구, 경남)
-	(주)에스아이건축디자인(대표: 손영희, 경남)
-	(주)에이치비건설(대표: 신정훈, 충북)
-	유니온건설(주)(대표: 이일구, 광주)
-	태룡건설(합자)(대표: 박성준, 경남)

● 부산 전문건설업체 등록현황

2018. 12. 31. 기준

지역	업체수	등록수	지역	업체수	등록수
중구	33	69	연제구	137	218
동구	49	98	해운대구	218	296
서구	24	28	수영구	112	176
사하구	69	93	부산진구	171	232
영도구	21	33	북구	80	105
동래구	172	225	사상구	120	153
남구	92	136	강서구	189	260
금정구	232	344	기장군	203	301
			<b>합계</b>	<b>1,922</b>	<b>2,767</b>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 되는 세상입니다.

사소한 작은 정보도 나중에는 유용하게 쓰인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한번 알아두면 두고두고 도움 되는 생활 속 팁을 알려드립니다.

꼭 기억해두시고 필요할 때 요긴하게 적용해보시기 바랍니다.

TIP  
01

## 운전하다 동물과 충돌했을 때

겨울철은 봄에 태어난 야생 동물이 성장해서 따로 살 곳을 찾아나서는 시기다. 이 때문에 동물이 도로에 출몰해 자동차 충돌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동물과 충돌했을 때는 비상 점멸등을 켜고 갓길에 차를 세운다. 안전 삼각대를 뒤에 오는 차량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고, 안전한 곳에서 사고 신고를 한다. 고속도로에서는 1588-2504번, 일반도로나 국도에서는 110번으로 전화하면, 사고 수습 처리반이 출동한다.

TIP  
02

## 옷에 남은 볼펜잉크 자국 지우기

업무를 하다 보면 종종 옷에 볼펜잉크가 묻기도 한다. 볼펜 잉크 자국을 지울 때 일반 세제보다 효과가 더 좋은 게 있는데, 바로 매니큐어를 지울 때 사용하는 아세톤이다. 얼룩진 부분 밑에 마른 수건을 깔고, 화장 솜에 아세톤을 충분히 적셔준다. 화장 솜을 볼펜 선이 안 보일 때까지 두드려주면 잉크 속 기름이 아세톤의 알코올에 녹아 없어진다. 볼펜 선이 다 지워졌어도 옷에 점처럼 남아 있다면 부드러운 칫솔에 주방세제를 묻혀 볼펜 자국을 살살 문지른다.

TIP  
03

## 자동차 담배 냄새 제거법

환기가 힘든 겨울에는 특히나 차내에 냄새가 많이 밴다. 차내에 찌든 담배 냄새를 없애보자. 먼저 알코올과 물, 부드러운 수건을 준비한다. 알코올과 물을 1대1로 섞고, 수건을 적신 뒤 적당히 짤다. 수건으로 핸들, 대시보드, 시트 등을 구석구석 부드럽게 닦으면, 알코올이 휘발되면서 담배 냄새가 없어진다. 다 닦고 나면 깨끗한 물수건으로 한 번 더 닦아준다. 마지막으로 차내에 습기가 남아있으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환기가 필수다.

## (주)YTN 복지혜택물 가입절차 및 이용 안내

※ 회사 임직원 모두가 가입 가능하며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부산사회 회원사가 공식 사이트에 가입 후 이용하게 되면, 가전제품과 패션잡화, 영화티켓, 문화상품권 등 다양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에서 30%~40% 추가 할인 가능합니다.

### 01. 가입방법

- ① 인터넷 가입 ▶  
협회전용 인증메일 가입사이트(www.ygoon.com/kosca21) 접속
- ② 모바일 가입 ▶  
카카오톡(내프로필 → 나와의 채팅) 오픈 후  
http://ymall.ygoon.com 입력

### 02. 회원가입

이메일 인증: 본인이 평소 이용하는 이메일 주소 입력  
 ※ 모바일 가입 경우 이름 앞에 반드시 기업명 기재  
 (ex. 전문건설 홍길동)

### 03. 비밀번호 등록(특수문자, 영문, 숫자 포함 8자리 이상)

### 04. 로그인

### 05. 복지몰 이용



## 인터넷 가입 절차

www.ygoon.com/kosca21 접속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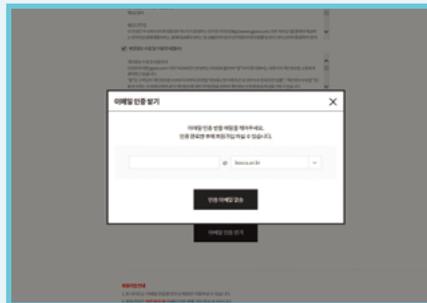
### 회원가입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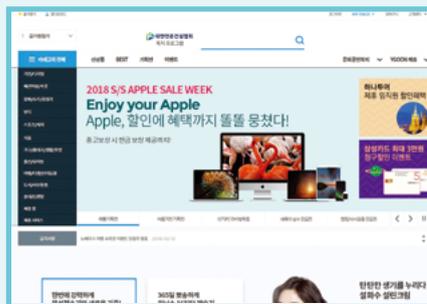
### 이메일 인증

03



### 로그인 후 이용

04



# 12

## 건설업 중대재해 사례와 대책

건설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산재사고와 관련하여 주요 재해사례를 소개하고, 회원사에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사례별 안전대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 ■ 흠막이 가시설 용단 작업 중 불티로 인한 화재(사망 1, 부상 2)

출처 안전보건공단

공사명	광고 ○○ 신축공사	발생일시	'17.012.25.(월), 14:46경
재해형태	화재	재해정도	사망 1명, 부상 2명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공사규모	지하5층 지상41층, 2개동
재해개요	'17. 12. 25.(월), 14:46경 경기 수원시 소재 ○○건설(주)에서 시공하는 ○○신축공사 현장에서 오피스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코어(Core)벽체에 부분 매립되어 있는 높이 약 3.5m의 H-Beam을 산소절단기로 용단 작업 중, 불티가 작업구간 후면에 아작된 단열재(0.9m × 1.8m, 우레탄보드, 약 180장)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여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한 재해임		

재해 상황도



#### 안전대책

##### ○ 화기 사용 금지 조치

가연물에 대한 제거가 이루어지지 않은 화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용단 작업을 실시할 때에는, 화기 사용 전 사전에 가연물에 대한 정리·제거를 실시하여야 함.

##### ○ 화재감시자 배치

연면적 15,000㎡ 이상의 건설공사가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지하장소에서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배치하여야 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장비(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를 지급하여야 함.

### ■ 건설현장 화재·폭발 관련 주요 법규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법 10조의 2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자는 공사 현장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 화재위험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요약

- ① 화재위험작업이란 인화성, 가연성, 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을 말하며 용접이나 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도 포함
- ② 전열기구나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작업을 하거나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키는 등의 작업을 할 경우 반드시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함
- ③ 임시소방시설 설치의무를 위반하면 시정보완 명령이 내려지며 보완 명령을 어길 경우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④ 임시소방시설의 설치대상 공사장은 건축허가등의 대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 모두가 포함되며 규모에 따라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소화기간이 소화장치·비상경보장치·간이피난유도선 등을 설치해야 함

■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 ① 소화기: 모든 공사 작업장에 설치
  - ② 간이소화장치\*: 연면적 3,000㎡ 이상 또는 해당 층의 바닥 면적이 600㎡ 이상인 지하층·무창층 및 4층 이상의 층
  - ③ 비상경보장치\*\*: 연면적 400㎡ 이상 또는 해당 층의 바닥 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무창층
  - ④ 간이피난유도선\*\*\*: 바닥 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무창층
- \* 물을 방사하여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 화재가 발생한 경우 주변에 있는 작업자에게 화재사실을 알릴 수 있는 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 화재가 발생한 경우 피난구 방향을 안내할 수 있는 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산업안전보건법**

- 용접 등 불꽃발생 작업 시 불꽃 비산방지, 환기 및 소화기구 비치 미준수로 화재가 빈발함에 따라 화재예방제도 강화
  - 불꽃발생 우려가 있는 화기작업 장소에 대해 원청의 안전 조치 책임을 부과(\*17. 10. 17. 시행규칙 개정)
  -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 시 사전 특별교육 실시(\*17. 10. 17. 시행규칙 개정)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 “가연물이 있는 곳에서의 용접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 슛돌에 의한 건삭연마 작업 등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이 포함(\*17.10.17. 시행규칙 제30조 4항 9호 라목 개정)

- 지하층 등 위험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할 때 대피업무를 전담하는 화재감시자 배치(\*17. 03. 03. 안전규칙 개정)

■ **화재감시자의 지정 및 배치장소**

- 연면적 15,000㎡ 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개조공사가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지하장소
  - 연면적 5,000㎡ 이상의 냉동·냉장창고 시설의 설비 공사 또는 단열공사 현장
  - 액화석유가스 운반선 중 단열재가 부착된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에 인접한 장소
- ※ 미지정·미배치: 4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기본적으로 체크하여야 할 조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9조	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의 사용금지	제243조	소화설비
제240조	유류 등이 있는 배관이나 용기의 용접 등	제244조	방화조치
제241조	통풍 등이 충분하지 않는 장소에서의 용접 등	제245조	화기사용 장소의 화재 방지
제242조	화기사용 금지	제246조	소각장

# SPECIAL 12 + 2018년도 건설(전문)공사 실적신고 및 2019년도 시공능력평가

2019년 시공능력을 평가받고자 하는 전문건설업체에서는 2019.02.15(금)까지 협회에 실적신고(방문 및 인터넷신고)를 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결산 재무제표 증명원의 경우 2019. 04. 15(월)까지(개인의 경우 2019. 05. 31(금)까지) 제출하여야 함. 법정 신고기한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함.

○ 2018년 실적신고는 **2018년 12월 31일 기준** 신고업체의 건설공사실적, 재무상태, 기술능력, 대외 신인도 등을 기준으로 하며, 실적신고 서류 제출 시 증빙서류가 정확하게 첨부된 경우에만 시공능력평가 및 입찰적격심사에 반영됨.

○ 2018년도 전문건설공사 실적신고서 작성요령 및 실적신고 프로그램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및 실적신고 홈페이지(<http://siljuk.kosca.or.kr>)에 서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주의사항

- ① 실적신고는 반드시 우리 협회 자체 실적신고프로그램 및 인터넷실적신고를 이용하여 작성·제출하여야 됨. **(수기제출 불가)**
- ② 실적신고 내용은 업체별 관할 세무서에 통보되어 과세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실적신고한 내용과 세무서의 신고내용은 일치하여야 함. (과세자료제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7조 및 시행령 제3조)
- ③ 불법·불공정 행위(일괄하도급, 재하도급, 영업정지처분위반 계약공사, 건설업등록 이전 계약공사 등)의 건설공사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할 등록관청에 행정제재 처분됨.
- ④ 실적신고 서류(건설공사실적, 기술자보유현황, 재무상태 등)를 허위제출 시 그에 따른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함.
- 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경력신고하여 학·경력자 자격등급을 취득한 건설기술자는 동 협회의 자료를 제공받아 평가하므로 자격증 사본 등 증빙서류 제출 없음.
- ⑥ **세부공종(전문)은 발주자가 원하는 분야의 특화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전문공사실적을 세분화한 것으로 해당공사 내용과 일치한 공종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세부공종으로 인정 가능함.** [국토교통부령 제317호, 2017. 06. 13. 일부개정]

## 전문공사 공사실적의 세부공종

실내건축공사업	일반실내건축공사,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	조경식재공사업	일반조경식재공사, 조경유지관리공사
토공사업	일반토공사, 발파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습식·방수공사업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	강구조물공사업	일반강구조물공사,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석공사업	석공사	철강재설치공사업	일반철강재설치공사, 교량철구조물설치공사
도장공사업	일반도장공사, 재(再)도장공사, 차선도색공사	삭도설치공사업	삭도설치·제거공사, 삭도유지관리공사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비계공사, 파일공사, 구조물해체공사	준설공사업	준설공사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금속구조물공사, 창호공사, 온실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업	일반승강기설치공사, 기계식주차기설치공사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지붕·판금공사, 건축물조립공사	가스시설사업(제1종)	가스시설사업(제1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	가스시설사업(제2종)	가스시설사업(제2종)
기계설비공사업	건축기계설비공사, 플랜트기계설비공사, 자동제어공사	가스시설사업(제3종)	가스시설사업(제3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상수도설비공사, 하수도설비공사	난방사업(제1종)	난방사업(제1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일반보링·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지하수개발공사)	난방사업(제2종)	난방사업(제2종)
철도·궤도공사업	철도·궤도공사	난방사업(제3종)	난방사업(제3종)
포장공사업	일반포장공사, 포장유지관리공사	시설물유지관리업	시설물유지관리공사
수중공사업	수중공사		

## 2019년도 시공능력평가·공시 절차

<b>강습회 실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8년도 실적신고 강습회: 2018년 12월 13일(목) 14시</li> <li>○실적신고 작성안내서 수령</li> </ul>
<b>프로그램설치 및 실적신고 서류 작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적신고서작성안내서 숙지</li> <li>○실적신고 프로그램 설치(<a href="http://siljuk.kosca.or.kr">http://siljuk.kosca.or.kr</a>)</li> <li>○설치된 프로그램에 실적신고 자료 입력(업체현황, 건설기술자, 기성실적, 우수/해외/기술 등)</li> </ul>
<b>실적신고 증빙서류준비 및 확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적신고 증빙서류 준비 및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성실적증명서 확인(발주자 또는 원도급자)</li> <li>- 건설공사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li> </ul> </li> <li>○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세무대리인 확인필)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개발투자비지출확인서 등</li> </ul> </li> <li>○기술능력평가 증빙서류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자자격증(경력증) 사본,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li> <li>- 고용보험/국민연금/서류 등</li> </ul> </li> <li>○신기술지정/우수건설업체/해외건설현장인력고용확인서 등</li> </ul>
<b>신고서류 편철 및 협회 실적신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적신고 프로그램에 작성한 실적신고서류 출력 및 편철</li> <li>○각종 증빙서류 첨부</li> <li>○제출서류 및 미비서류 유무 확인, 납부할 회비 확인</li> <li>○협회 실적신고(2019년 2월 15일까지) 및 회비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신고 시 제출서류: 우편발송은 2019년 2월 15일 도착 분까지 유효</li> <li>- 재무제표: 2019년 4월 15일(단, 개인업체는 2019년 5월 31일까지)</li> </ul> </li> </ul>
<b>시공능력평가액 산정작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공사실적신고접수확인서 발급</li> </ul>
<b>2019년도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공능력평가액 산정자료 확인(협회 홈페이지 마이페이지)</li> <li>○시공능력평가액 공시: 2019년 7월 말(예정) (공시방법: 협회 정보통신망)</li> <li>○시공능력평가액 기재: 2019년 8월 1일(목)부터</li> </ul>

## 종합·전문건설업 겸업업체 등 재무제표 자료 공동 활용

재무제표 신고 일원화 대상 협회	
겸업업체	제출처
종합, 전문 겸업업체	대한건설협회
전문과 기계설비, 시설물 겸업업체	대한전문건설협회
기계설비와 시설물 겸업업체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종합건설협회에 신고한 종합·전문겸업업체는 **대한건설협회에 신고**하면 되고 우리 협회에는 신고할 필요 없음. 실적신고 프로그램 **재무제표(2차신고) 메뉴 입력 불가**
- 전문과 기계설비 또는 시설물 겸업업체는 **우리 협회로만 재무제표를 입력·신고**하면 기계설비와 시설물협회로 자료가 공유됨.  
 ※ **재무제표확인원(또는 감사보고서)**은 반드시 우리 협회에 제출하여야 신고가 완료됨. (공동활용 협회에는 신고 및 자료 제출 불필요)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의 평가 방법

$$\text{시공능력평가액} = \text{공사실적평가액} + \text{경영평가액} + \text{기술능력평가액} \pm \text{신인도평가액}$$

### 1. 공사실적평가액

- 공사실적평가액 산식

$$\text{공사실적평가액} = (\text{최근 3년간 해당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 \div \text{해당업종별 건설업 영위기간}) \times 70/100$$

- ※ 건설업 영위기간: 1년 미만 = 1, 1년 이상 3년 미만 = 건설업영위월수/12
- ※ 건설업영위월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절사함
- ※ 최근 3년간 해당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  $[(\text{평가년도 이전 1차년도 공사실적액} \times 1.2) + (\text{평가년도 이전 2차년도 공사실적액} \times 1) + (\text{평가년도 이전 3차년도 공사실적액} \times 0.8)] \div 3$

### 2. 경영평가액

- 경영평가액 산식

$$\text{경영평가액} = (\text{실질자본금} \times \text{경영평점}) \times 80/100$$

#### (1) 실질자본금

-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한다.
- 건설업 외의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자인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되, 평가년도 직전년도에 건설업을 신규로 등록한 경우 산정된 실질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 이하인 때에는 등록기준상 자본금을 실질자본금으로 한다.

#### (2) 경영평점

- 경영평점 산식

$$\text{경영평점} = (\text{차입금의존도평점} + \text{이자보상비율평점} + \text{자기자본비율평점} + \text{매출액순이익률평점} + \text{총자본회전율평점}) \div 5$$

- ① 차입금의존도평점 = 업계전체가중평균비율 ÷ 차입금의존도비율 **【차입금의존도비율 = 차입금/총자산 × 100】**
- ② 이자보상비율평점 = 이자보상비율 ÷ 업계전체가중평균비율 **【이자보상비율 = 영업이익/이자비용 × 100】**
- ③ 자기자본비율평점 = 자기자본비율 ÷ 업계전체가중평균비율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본 × 100】**
- ④ 매출액이익률평점 = 매출액순이익률 ÷ 업계전체가중평균 **【매출액순이익률 = 법인세(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매출액 × 100】**
- ⑤ 총자본회전율평점 = 총자본회전율 ÷ 업계전체가중평균비율 **【총자본회전율 = 매출액/총자본】**

## 차입금 항목(예시)

/ 참고사항

유동 부채			비유동 부채		
관계회사단기차입금	유동성외화장기부채	단기차입금	관계회사장기차입금	외화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유동성장기차입금	단기사채	유동성장기부채	장기외화차입금	국민주택기금(차입)	장기용자금
단기용자금	유동성장기채무	당좌차월	금융리스미지급금	장기차입금	금융리스부채
유동성외화장기차입금	어음차입금	유동성전환사채	전환사채	금융리스장기차입금	주주임원종업원장기차입금
유동성사채	주주임원종업원단기차입금	외화단기차입금	사채	차관	신주인수권부사채
<b>가수금</b>	유동성금융리스미지급금	유동성금융리스부채	<b>가수금</b>	외화금융리스부채	외화사채
위 계정과목 외 차입금			위 계정과목 외 차입금		

5개 비율평점 (①+②+③+④+⑤)을 더하여 5로 나눈 것을 경영평점으로 함

- 이 경우 각 각의 평점이 3점을 초과할 때 “3”, 3 이하일 때에는 “3”으로 함
- 업계전체가중평균비율은 이자보상비율, 자기자본비율 및 매출액순이익률 중 “0” 이하인 비율을 제외함
- 경영평점이 3을 초과한 때에는 “3”으로, -3 이하일 때에는 각각 “-3”으로 함
- 경영평점이 0 미만일 경우 경영평가액은 “0”이 되도록 평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 미만일 때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3) 위 경영평가액의 산식 중 실질자본금이 0 미만인 때의 경영평가액은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4) 공사실적평가액이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보다 적거나 많은 경우
- 공사실적평가액이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의 ±6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공사실적평가액이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 이상인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공사실적평가액의 ±6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 3. 기술능력 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산식

$$\text{기술능력평가액} = \text{기술능력생산액(전년도 동종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times \text{보유기술자 수} \times 30/100) + \text{퇴직공제납입금} \times 10 + \text{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액}$$

(1) 기술능력생산액

- 실질자본금의 2배 또는 공사실적평가액의 50% 중 큰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함.
- 전년도 동종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전문건설업계의 국내 총기성액을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총수로 나눈 금액

# SPECIAL 12 + 2018년도 건설(전문)공사 실적신고 및 2019년도 시공능력평가

- 보유기술자수: 매 연도 말 현재 해당업종의 건설업 등록기준에서 인정하는 기술자수로 하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로서 초급 기술자인 경우에는 초급기술자 수에 1, 중급기술자인 경우에는 중급기술자 수에 1.15, 고급기술자인 경우에는 고급기술자 수에 1.3, 특급기술자인 경우에는 특급기술자 수에 1.5, 그 밖의 기술자(「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 중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장, 기능사, 기능사보로 한정한다)인 경우에는 그 기술자 수에 1을 각각 곱함

## (2) 퇴직공제 **납입금** × 10

- 퇴직공제납입금은 전년도 중,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공제부금으로 납입한 금액

## (3) 기술개발투자액

- 기술개발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1) 해당 연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발생 명세상의 금액 중 건설업에 실제 사용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실질자본금과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50 중 큰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4. 신인도 평가액

신인도 요소별 평가액의 합계액은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 평균액의 ±30/100을 초과할 수 없음

### (1) 신기술의 지정, 우수건설업자 지정된 업체, **ISO 삭제**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자인 경우 최근 3년간 공사실적 연차별 가중평균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더함
- 이 경우 동일분야에서 2개 이상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1개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함

### (2) 건설업 영위기간

- 동일업종의 전문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더함

### (3)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업체

- 평가년도 직전년도에 법 제82조 제1항1호, 제2항 제5호 및 **제82조의2** 법 제83조 제10호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 최근 3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영업정지기간(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에 상응하는 영업정지 기간)인 월수를 곱한 금액을 뺌
-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1호(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할 때) 제2항 제5호(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 제82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으로 영업정지 등을 받은 경우) / 제83조 제10호(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惹起)하여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 (4) 기준재해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6호)

- 직전영업 연도 중에 평균재해율의 1~2배 이내의 재해를 발생시킨 업체의 경우 최근 3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3/100을 빼고, 평균재해율의 2배를 초과한 업체의 경우 최근 3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5/100을 뺌.
- ※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평가 시 공사실적액의 감액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

### (5) 부도업체

- 최근 3년 이내에 부도가 발생한 건설업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뺌

### (6) 환경관리 및 건설폐기물 처리실태 우수업체

- 공사 시공상 환경관리 및 건설폐기물의 처리실태가 우수하거나 불량한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2/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뺄 수 있음
- ※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평가 시 공사실적액의 증액 또는 감액요청이 있는 경우

(7) 국내인력을 해외건설현장에 고용한 건설업자【해외건설촉진법 제6조】

- 고용인원수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더하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2/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금액의 2배를 더한다.
  - 고용인원수가 1~50명 미만인 경우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
  - 고용인원수가 50~500명 미만인 경우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1.5/100에 해당하는 금액
  - 고용인원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2/100에 해당하는 금액
- 고용인원수는 건설공사 실적신고 대상연도를 기준으로 하되, 3개월 이상 체류한 인력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업체가 고용하고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는 인력만 해당하며 하도급업체가 고용한 인력은 제외
- 해외건설촉진법 제23조에 따라 해외건설협회장으로부터 해외건설현장에 고용된 국내인력에 대하여 해외건설현장 인력고용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8) 건설공사 실적 등의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허위제출 사실이 확인된 때의 다음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시공능력평가 시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9) 상습체불업체

- 법 제86조의4 및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전년도에 상습체불건설업자 또는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건설업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10) 건설기술자교육 이수한 자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평가기준이 직전년도에 건설기술자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술자 1인당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4를 초과할 수 없음

## 5. 기타

-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건설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와 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을 양수한 건설업자의 당해연도 시공능력 및 다음연도 시공능력을 산정함에 있어서 경영평점은 이를 “1”로 한다. 다만, 건설업을 영위하던 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의 등록을 하거나 건설업을 양수한 경우에는 이미 평가한 경영평점을 적용할 수 있음
- (2) 2 이상 건설업을 겸업하는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업종별로 구분하여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신인도 평가액을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 (3) 산정한 시공능력평가액이 0 이하인 경우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0”으로 한다.

※ 직직연도(2016년), 직전연도(2017년)의 전체 또는 일부공사 실적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은 2018년 실적신고 시 함께 제출(각 연도별 신고)할 수 있음

## 2019년 건설업 교육 이수 안내



우리 협회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에 근거하여 2016. 2. 12. 이후 건설업을 신규로 등록한 자(건설업자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한 경우 제외) 및 **영업정지 기간 중인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건설업 신규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의무교육으로써 건설업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영업정지 기간 중인 건설업체의 경우는 동 교육 이수 시 최대 15일 감경될 수 있다.

### 1. 교육과정

#### 가. 교육일자 및 장소

교육일자	교육장소
2019. 02. 15.(금)	
2019. 06. 21.(금)	<b>부산상공회의소</b> 1호선 범내골역 4번 출구, 부산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 2층 국제회의장
2019. 09. 20.(금)	

※ 타 지역 및 다른 일정을 원하실 경우, 홈페이지(edu.kosca.or.kr) 확인 후 신청 가능.  
 ※ 주차장이 협소하여 주차비용이 과다 지급될 수 있으므로 대중교통 이용 바람.

#### 나. 교육내용: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

#### 다. 교육대상

- 건설업 신규등록자(추가 면허등록 제외) [의무교육]  
 '16. 2. 12. 이후 건설업 신규등록 업체 ▶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건설업 등록 후 6개월 이내 교육 미이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과태료) 제12호]
- 영업정지 처분 이후 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건설업등록업자 [임의교육]  
 '16. 2. 12. 이후 영업정지 처분 중에 있는 업체 ▶ 영업정지 기간 내  
 ※ 교육이수에 따른 인센티브: 영업정지기간 최대 15일 감경 → 법인 대표자 수료 시 15일, 등기부상 임원 수료 시 1인당 5일 감경(최대 3인)  
 ※ 감경 받은 후 1년 이내 다시 위반 시 감경 불가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3(시행일: 2016. 2. 11.)]
- 교육 참석대상자  
 법인: 대표자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중 1인  
 개인: 대표자

라. 교육시간: 1일 8시간(9시~18시)

마. 교육비: 15만원(교재·중식 포함)

- 납부방법: 카드결제 또는 계좌이체
- 영수증 발급: 홈페이지에서 영수증 출력 또는 교육 이수 후 전자계산서 발행

### 2. 신청방법

가.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교육센터 홈페이지(edu.kosca.or.kr)를 통해 교육일정, 교육안내, 교육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을 확인 후 신청

나. 문의처: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교육센터 담당자(☎02-3284-1080, 1076)

## KOSCA 중앙회 업무단신

- ▷ 김영운 중앙회장은 11월 1일 '2018 건설산업 CEO 미래전략포럼'에 참석하여,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두관 국회의원,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 심광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을 만나 건설산업 혁신방안과 생산구조 혁신 방향 등에 대해 협의했다.
- ▷ 김영운 중앙회장은 11월 15일 중소기업 중앙회가 주최한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정책간담회'에 전문건설업계를 대표해 참석했다. 김영운 회장은 △건설현장의 합법적인 외국인력 고용 환경 마련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특별연장근로 확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범위 확대 등을 건의했다.

## 전문건설공제조합 업무단신

- ▷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 및 보증채권자의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첨부 없이도 인터넷으로 발급한 보증서를 출력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시스템을 개선했다.

조합원 및 보증채권자는 12월 12일부터 조합 홈페이지(www.kscfc.co.kr) ⇒ 조회서비스 ⇒ 보증출력센터를 통해 보증서번호와 출력 인증번호를 등록해 언제든지 보증서 출력이 가능하다.



## 우리 시회 2019년 1/4분기 주요일정 안내

일자	주요일정
01. 23. (수)	· 제34회 정기총회
01. 28. (월)~ 02. 15. (금)	· 실적신고(1차) 접수
2019. 02월 중	· 제1차 부산전문건설인 산행(예정)
04. 15. (월)	· 실적신고(2차) 재무제표 제출 ※ 개인업체는 05. 31. (금) 까지

※ 상기 일정은 협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코스카레터를 읽고..

코스카레터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나, 아쉬웠던 부분,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다뤘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독자의견은 메일(kosca21@kosca.or.kr)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독자의견을 보내주시는 분께는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상품** (문화상품권 등)을 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동림건설(주)  
노상남 과장

**협** 회에서 분기별로 발간되는 코스카레터를 통해 건설관련 법령 및 정보들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소통하는 문화공간이나 딱딱한 업무내용도 유머를 통해 쉬어가며 볼 수 있도록 제작된 부분도 좋고요. 다만, 업무를 반복하다 보니 주요 업무편람처럼 참고할 수 있는 코너를 분기별 초나 마지막에 특집코너처럼 제작해주시면 전체 코스카레터를 찾지 않아도 참고하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회원사 의견에 늘 귀 기울여 주시는 협회 직원분들 감사드리고 더욱 발전하는 코스카레터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현복엔지니어링  
김양완 대표

**전** 문건설업을 등록한 지 올해로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비회원으로 있다가 지난달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회원사 가입 후 협회에서 보내주시는 코스카레터를 읽고 업을 하는 데 여러 가지로 유용하게 정보를 접할 수 있어 참 좋습니다. 개정 건설법률, 문화, 건강 상식, 유머, 명소탐방 등 다양한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회원사들의 도움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코스카레터 잘 읽으셨나요? Quiz를 풀고 정답을 맞춰주세요~

## 독자퀴즈

**Q** 기획재정부에서는 2018.12.04.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하였습니다. 이번 개정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서 지역제한 경쟁 입찰의 전문공사 대상을 얼마로 확대하였을까요? (중전 7억원 미만)

### 지난호 독자퀴즈 정답자 발표

- 대원에코필드(주) 김문선 대표이사
- (주)빅인테리어 최주희 과장

### 지난호 독자퀴즈 정답

- 8일

정답을 아시는 분은 협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팝업창을 통해 응모하시면(기간: 2019.02.28.(목)까지) 추첨하여(정답자에 한함)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불공정하도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이제 협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 불공정하도급 상담센터 운영 안내

※ 상담센터 주소 :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 5길 15 전문건설회관 18층

## 운영 목적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로 피해를 입은 회원사에게 건설 하도급법령과 피해구제 절차 상담 등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 및 구제방안을 지원

## 센터 기능

하도급관련법령  
(하도급법, 건설산업  
기본법 등) 상담

건설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 신청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의  
전문변호사를 통한  
법률자문 등

## 센터 운영

- 매주 수요일에 **대면상담**, 피해상담 및 분쟁조정 지원
- 매년 2회(상·하반기) 전국 시·도회를 순회 방문, 회원사 상담 지원

## 상담 신청 방법

- 중앙회 홈페이지 ([www.kosca.or.kr](http://www.kosca.or.kr)) 접속
- ➔ 불공정하도급 상담센터 클릭
  - ➔ 신청서 작성 후 E-mail ([clean@kosca.or.kr](mailto:clean@kosca.or.kr)) 또는 FAX 02-3284-1091로 제출



기해년 첫날의 해가 떠올랐습니다.  
은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붉은 해를 바라보며  
올해의 희망과 소망을 빌어봅니다.  
지난 나를 돌아보고 새로운 다짐을 하며  
희망찬 새해를 맞이합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30번길 30, 4층(범천동, 전문건설회관)  
Tel. 051-633-0260 Fax. 051-633-0261  
[www.kosca21.or.kr](http://www.kosca21.or.kr)